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10-01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

농림수산물식품자료실



0018568

경상대학교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

경상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일

소 속 : 경상대학교

연구책임자 : 류 충 호

참여연구원 : 김 진 석

김 윤 식

이 정 옥

김 은 자

김 의 조

김 진 용

손 용 휘

남 경 수

김 경 혁

<연구 요약>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높아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소량 안전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로는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하는 기호를 충족시켜줄 틈새시장이 필요한데 산지에서 생산자가 가공하는 산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지형 소규모 식품산업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농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산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생산자가 산지의 소규모 식품시설에서 생산한 식품이 식품위생법상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이유로 산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에서 소규모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창업과정 및 운영상 애로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이와 함께 소규모 식품업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에 해당하는 최소 시설기준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매뉴얼 설계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생산지인 농촌지역에서 작업장(공장)의 허가과정에서 폐수관계
 문제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에 따른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의 불가로 작업장(가공장) 확보에 어려움.

- 간단한 소도구 및 원료세척(100Kg/1회) 시 최소 1m³ 정도의 물이 소요되므로 가공공장상 폐수배출시설을 벗어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가공용 건축물의 신·개축, 변경 등이 불가함.
- 다만 농가나 농가부속건물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됨(가공시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배출수를 오수로 산정하여 정화조를 설치토록 함.
- 허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수관련 기준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라 작업장 폐쇄조치 등이 취해져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창업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하여야 함.

□ 개선방안 : 가공작업장을 농가 내 설치하여 농가부속시설로 인정받아 농산물 가공을 농업행위로 보고, 최대 66m²(약 20py) 이하의 규모에 대하여는 가공장의 배출수를 농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정함으로써 폐수와 관련한 허가상의 불가원인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별표내용 예외 조항 신설)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의 정의

농촌에서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연접한 토지에 위치한 66m²(20py)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말한다.

-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연간 생산되는 제품의 양이나 작업일수는 일반적으로 매일 작업하는 식품공장에 비하여 소량이며 수습 일에 지나지 않음. (발생량을 연중 평균량으로 환산하면 0.1m³ 이하로 발생함)
- 폐수의 발생량이 적은 10대 전통식품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외 인정 유도. (다류, 두부·묵류, 장류, 한과(엿), 떡·과자류, 음료류(과실액기스), 조미식품류(식초), 절임식품류(장아찌), 주류(농민주), 기타식품(건조, 환 등))
- 농산물을 가공하여 발생하는 배출수에는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되기 어렵고, 농가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오염물질의 양이 다르지 않음.
- 제조장의 규모(정의)로 제한하여 특례 또는 제외내용을 추가할 때 일반

제조업의 식품업체와는 경계를 둬으로써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하여 제한적 허용.

- 오수로 인정되면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로 초기 투자 비용 절감 및 농촌지역 내 식품제조업 허가지역 확대 가능
- 기존 농촌지역 내 허가상의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즉석가공식품 제조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일부 시·군, 판매방법 한계의 극복)

2)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과도한 시설투자

□ 문제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에 따라 ‘제조장’ 기준은 소규모 이상의 매일 작업하고 유통판매량이 상당하여 식중독 등 사고에 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의 작업장 기준으로 농가형 1인 창조기업에게는 과중한 기준임.

- 제품에 따라 연중 1회 또는 2회 제조하여 판매도 설,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판매되거나 생산량이 소량으로 매출액이 소액일 경우 투자비 대비 소득은 작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창업을 포기하거나 무허가로 함.
- 시행규칙에 특례조항을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모의 영세함과 창업자의 요구가 적어서 조례를 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선방안 :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의 제조공정에 만족하는 최소시설기준(안)을 제시함.

-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위해요소 방지시설을 구비보다 작업자의 부주의나 작업방식에 의해 불량식품이 생산되므로 오염 방지시설의 최소한을 제시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제품별 제조공정이 상이하고 소요되는 기계나 기구, 작업 공간의 차이가 커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제품별·제조공정에 따른 별도 시설기준이 필요함 (예: 녹차의 경우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덫음 술 및 건조대 필요).

- 단, 일반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본문 참조).

3) 창업지원제도 및 정책방안 연구

□ 문제점 : 농가형 소규모식품업체 창업은 장래가 유망하거나 경쟁력 있는 기술력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형태가 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수혜를 받기에는 불가능함.

- 전통적인 제조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작은 노하우의 차이로 제품의 기호도가 다를 수 있으나 획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적 특성으로 시장에서 유망한 상품에 해당되지 못하고 틈새시장에 해당함.
- 그러나 농업생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농업경영체의 입장에서는 매출 및 소득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촌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의 (여성)창업과 관련하여 지원정책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량이 작아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감.

□ 개선방안 :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는 소액투자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과 사업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아래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① 농촌형 소규모식품업체(1인창업기업)의 정의를 통해 법률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호적 창업보육을 실시.

- 소규모인 점을 제한하여 규제 및 법률 준수사항의 예외규정으로 창업 장벽 완화(폐수 등)와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② 식품표시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가이드 또는 권고안 제시

- 현행 식품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따라 라벨을 제조하여야 하나 내용이 77쪽에 이르는 방대하여 창업자나 라벨 제조업체에서 잦은 실수를 통해 행정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한 표시사항 확인제도가 필요함.
- 유통기한 설정에 관련한 기준에 따라 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비용과 실험

에 따른 기간 소요가 되므로, 농가형 제품유형별 최대 유통기한을 권고함으로써 창업 시 '품목제조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음.

③ 생산물 책임이행 확인을 위한 PL보험 지원

-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소규모식품업체에서 식품사고는 업체의 도산, 폐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요소를 안고 가야하는 리스크가 큰 업종으로 법률적 지식이나 인적조직이 취약한 업체에게 PL보험은 적절한 대안임.
- 또한 PL보험가입은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인 사고에 대한 보증에 되고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방편이 되나 비용부분에서 가입을 주저하게 됨.
- 국산 원료의 사용과 ①항에서 정의한 소규모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에 PL보험 가입비(100만원한도)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농가경영에 효과적일 것임.

④ 원재료 확보 및 노동력 조달 지원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재배 등으로 안정적인 원료수급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가공용 계약재배농가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일시적이긴 하지만 단시간에 1년 판매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⑤ 판매망 및 기술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국산원료 사용 및 소규모식품업체의 정의 따른 지정이나 인증(Farm-made)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1인 창조기업) 전문쇼핑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판매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관리도 가능함.
-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관리(자가품질검사 등)와 작업기준(매뉴얼) 작성, 정부의 연구개발기술의 이전-전수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제품의 리뉴얼이나 포장법 등의 지원으로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⑥ 농업기술센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 필요
- 창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간 및 가공기계류를 확보하여 창업 초기단계의 소규모식품업체에게 시제품 제작지원과 고가장비의 대여, 외주 가공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창업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창업 상담, 사업계획,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작업장 구축 및 기자재의 구입지도 등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여 창업자의 시행착오 예방과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소규모식품업체를 육성(창업보육)해야 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창업관련 인력풀을 활용하여 기업가정신(마인드) 과 기술 교육을 통해 안정적 경영과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4)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가공 식품업체 창업매뉴얼 필요에 따른 설계

- 문제점 : 전문적인 경영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공서 업무에도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의 식품제조업 창업은 다른 산업의 창업보다 몇 배는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가이드북이나 매뉴얼이 없어 창업자 및 창업지도자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게 창업하거나 창업을 포기하게 됨.
- 식품제조업은 제조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므로 건축물 관련 인허가가 선행적으로 필수요건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제조장의 공간 확보와 시설을 준비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때문에 좌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제조하던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공한 식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판매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검토되어야 할 많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잘못 인지하여 창업이 좌절되거나 중복투자 되어야 할 때가 많음.
 - 인허가와 관련한 다수의 담당부서업무만 처리함으로써 총체적인 일괄적인 민원안내가 어려워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전 검토를 할 만한 참고자료가 분산되어 검토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누락되기 쉬운 현실임.

- 개선방안 : 소규모 농산물가공업체를 위한 창업매뉴얼 개발을 통해 창업자 및 창업 관련 민원부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체적인 창업지도를 통해 사전 보완 또는 대책마련을 통해 창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준수규정이나 기준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시 확인하거나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세울 수 있음.
- 사례를 통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업무내용을 적시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같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농가형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창업지도자에게는 가이드북으로서 유관기관 간 창업 정보공유가 될 수 있음.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2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개념과 현황

1. 소규모 식품업체의 유형 및 실태	5
1.1. 장류의 생산 실태	5
1.2. 다류의 생산 실태	6
1.3. 주류의 생산 실태	7
1.4. 한과류의 생산 실태	8
2.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및 지원정책	11
2.1. 1인 창조기업의 정의	11
2.2. 1인 창조기업의 분류 - 중소기업청	12
2.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14

제3장..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및 판매산업 지원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16
1.1. 컨설팅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17
1.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18
1.3.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농촌여성창업지원): 농촌진흥청	18
2.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20
2.1. 창업컨설팅: 중소기업청	20

2.2.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사업: 경기도	20
3. 해외 사례: 일본	22
3.1. 일본에서 농산물가공에 대한 지원정책	22
3.2. 우에노가 쌀빵 가공부회 가공사례	26
3.3. 유즈노 법경 마을 가공사례	27

제4장.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및 활성화 방안

1.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정의	28
2. 법적·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6
2.1. 시설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2.2. 식품업 주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
2.3. 폐수 관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
2.4.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2.5.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46
2.6. 유통기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2.7. 책임이행 위험과 PL(Product Liability) 보험 지원	47
3. 경영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3.1.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50
3.2. 신상품의 시장개발	53
3.3. 소규모 식품업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	57
4. 행정적인 지원 방안	63
4.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역할 강화	63
4.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교육 강화	66
4.3. 창업어드바이저 활용 강화	67
4.4. 소규모 식품업체의 제품개발지원	67

제5장.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안)

1. 소규모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 기준	70
---------------------------------	----

1.1. 현행 시설기준의 문제점	70
1.2. 현행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상품목	72
1.3. 표준공정도에 따른 시설 기준 설정	73
2.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 설계	82
2.1.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의 필요성	82
2.2.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의 내용	82

제6장. 결론

결론	85
----------	----

부록

제 1 장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 비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높아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소량 안전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로는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농수산물 산지에서의 소규모 식품산업의 활성화는 다양해진 소비자 기호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일정 정도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 추세에 맞춰 산지에서의 소규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DDA와 같은 다자간 협상과 FTA 등의 양자간 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농어업 분야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폭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 2004년에 FTA를 체결하였고, 이후 ASEAN 및 유럽의 EFTA와 FTA를 체결하였다. 미국 및 EU와의 FTA협상도 타결되었고 현재는 국회(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일본과 중국과의 FTA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간 FTA가 모두 타결되면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대폭적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외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산지에서의 소규모 식품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도 소규모식품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지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활성화되면서 산지에 대규모

규격화되고 균질의 농수산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산규모가 영세한 농업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유통 채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판로는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가공 판매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체험여행과 현장실습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도시민들의 농어촌 방문이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산지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산지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식품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산지의 농업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면 농한기 등의 시기에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위생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식품업체가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실질적으로 중규모 이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규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기업을 창업하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과도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산지에서는 중규모보다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업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기업 창업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규정이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초기 비용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식품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내용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소규모 식품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나 예외규정을 들 경

우 다양한 형태의 업체가 나타나 위생이나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미흡한 상품을 생산될 경우, 해당 부문 식품업체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된 상품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식품가공업체로써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 오촌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최소 품질 유지를 위해 품목별로 가공시설의 최소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제약 요인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행정관청이나 인허가 기관을 방문하여 창업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매뉴얼을 설계하고 창업에 따른 애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산지에서 농어업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첫째, 1인 및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통한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과정상의 애로점과 업체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식품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시행령 등을 분석하여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할 때 접하게 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 도출한다. 식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식품위생법, 폐수 관련법, 주세법, 식품안전기본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이들 규정들을 분석하여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되거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정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식품업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안) 제시한다.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품질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제도를 조사한다. 현재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정부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기업 창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농수산물 생산지에서의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농업인이 소규모식품업체 창업 및 활성화가 쉽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소규모 식품업체 및 1인 창조기업의 개념과 현황

1. 소규모 식품업체의 유형 및 실태

소규모 식품업체라 함은 공장이 일정 수준 규모화된 식품업체를 제외한 전통형식의 소규모 가공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김치절임, 인삼가공, 음료, 장류, 주류, 다류, 축산가공, 한과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표 2-1. 품목별 가공업체 현황 (4인 이하 소규모 업체)

단위: 개

구분	김치절 임류	장류	다류	음료류	주류	한과류	축산 가공	인삼 가공	기타	계
2001	96	83	69	37	37	32	28	18	231	659
2004	61	58	48	47	40	26	20	15	154	46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5.

1.1. 장류의 생산 실태

품목별로 가공업체 현황을 볼 때, 김치 절임류에 이어 업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 장류산업이다(10인 이상 통계자료). 그러나 장류에 소규모 업체수가 많은 것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제조되어온 기술과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가공업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치 절임류 외에 가장 많은 업체수를 보유한 장류산업 역시 식품제조에서의 비중은 높지 않다.

표 2-2. 장류 제조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출하액	생산액	생산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944,712,670	948,643,542	619,632,675	61,785	2,507,598
식료품 제조업	40,626,204	40,894,443	25,797,583	3,978	149,75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2,809,911	2,813,353	1,867,335	289	9,828
- 발효 및 화학 조미료	257,998	247,593	214,087	7	562
- 천연, 혼합조미료	1,539,854	1,546,449	1,073,165	135	4,606
- 장류 제조업	659,821	661,481	364,837	98	2,854
- 기타식품첨가물제조업	352,238	357,830	215,246	49	1,80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007년.

표 2-3. 장류 매출규모별 업체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1억 미만	1~3억 미만	3~5억 미만	5~10억 미만	10억 이상
업체수	58	15	14	5	11	13
(%)	(100.0)	(25.9)	(24.1)	(8.6)	(19.0)	(22.4)
매출액	47,373	611	2,154	1,759	8,611	34,238
(%)	(100.0)	(1.3)	(4.5)	(3.7)	(18.2)	(72.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5.

장류 매출규모별 업체 현황을 보면 매출규모가 3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업체수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나, 매출액으로 보면 이들 업체의 비중은 5.8%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장류 업계의 영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 다류의 생산 실태

전체 식료품 제조업의 매출액에서 다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도로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류 제조는 업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표 2-4. 다류 제조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출하액	생산액	생산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944,712,670	948,643,542	619,632,675	61,785	2,507,598
식료품 제조업	40,626,204	40,894,443	25,797,583	3,978	149,758
다류 제조업	317,731	321,697	147,206	85	2,60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007년.

다류 산업에서 가장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녹차인데, 재배면적은 2001년 1,505ha에서 2005년에 3,042ha로 증가하였다. 생산량도 2001년에 14,101톤에서 2005년에 36,543톤으로 증가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녹차의 1인당 소비량은 2001년에 27.5g에서 2003년에 39.8g으로 증가하였다.

녹차산업은 산업화가 추진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고 1인당 소비수준도 주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산업의 규모도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녹차 가공업은 향후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녹차산업은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 대중화된 상품부터 극소량만 생산되는 최고급품까지 수요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녹차산업은 대량생산 체제와 더불어 소규모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1.3. 주류의 생산 실태

2007년 기준 주류생산업체는 100여개로 6,300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의 2.5%, 종업원의 4% 수준이다. 주류 생산업체수와 종업원수의 감소,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료품의 개발 등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주류 생산업체의 매출액은 400조원으로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2-5. 주류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출하액	생산액	생산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944,712,670	948,643,542	619,632,675	61,785	2,507,598
식료품	40,626,204	40,894,443	25,797,583	3,978	149,758
알콜음료	4,315,844	4,322,057	1,569,781	102	6,373
-발효주	2,184,754	2,183,580	636,812	71	3,239
-탁주,약주	228,283	230,936	79,490	41	1,020
-청주	n.a.	n.a.	n.a.	1	n.a.
-맥아, 맥주	1,773,174	1,768,490	490,752	9	1,676
-기타발효	n.a.	n.a.	n.a.	20	n.a.
-증류주	2,131,090	2,138,477	932,969	31	3,134
-주정	352,755	356,600	209,160	8	469
-소주	1,503,805	1,508,010	608,126	15	2,4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007년.

1.4. 한과류의 생산 실태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장류를 제외하면 산업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한과류 산업이다. 농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곡물 가운데 쌀, 잡곡, 콩 등이 가공식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는 한과류, 장류, 떡류, 미숫가루, 선식 등이 있다.

표 2-6.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농산물

곡물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축산물	기타	합계
41.4%	22.4%	19.0%	10.3%	1.7%	5.1%	1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5.

떡, 빵 및 한과류 제조업체의 매출액 가운데 한과류의 매출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빵류가 많고 떡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떡의 경우 최근 들어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빵류는 연간 소비가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이 대부분 이용된다는 점에서 빵류 산업의 성장이 우리 농산물의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과류는 떡류에 비해 매출규모도 크고 업체수도 많으나, 한과류는 떡류보다도 더 소비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소비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사업체 운영 및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 2-7. 한과류 제조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출하액	생산액	생산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944,712,670	948,643,542	619,632,675	61,785	2,507,598
식료품 제조업	40,626,204	40,894,443	25,797,583	3,978	149,758
떡, 빵 및 한과류 제조업	3,826,945	3,824,275	1,695,399	431	19,106
- 떡류	168,362	168,735	88,850	82	1,979
- 빵류	1,365,237	1,366,106	538,937	180	8,566
- 한과류 제조업	2,293,346	2,289,434	1,067,612	169	8,56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007년.

1.5. 소규모 농촌가공식품업체의 역할 및 기회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 및 활성화를 통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비등급품을 가공함으로써 1차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수익의 창출
- 생산물을 특산화 함으로써 지역활성화 기여
- 상품을 생산하는 것 뿐만아니라 가공함으로써 지역사람끼리 상호교류의 장
- 도시와 농촌의 교류장소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정보전달의 장
- 가공품과 함께 농산품을 지역레스토랑 등에 공급함으로써 더욱 부가가치 제고
-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을 통해서 신(新) 산지형성을 촉진하고 지역농발전 공헌

-직영판매시설을 통한 가까운 미래의 지역농업을 규모화 하는데 안테나역할(정보수집)

-지역 식문화 발굴을 통해서 그 지역 식문화를 계승하는 장소

-가공체험을 통해서 선종의 지혜와 생산되는 특산물의 홍보와 교육의 장소

-사업성이 약한 제품에 대하여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특산품 개발계기

-가공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유기퇴비화하고 다른 원료를 생산하는데 연결시키는 순환농법 구성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

조상들의 원료를 생산하여 삶거나, 찌고, 반죽하고, 섞고, 발효·숙성을 통한 전통의 방식을 복합해서 소재에 적합한 가공방법을 개발되었고 이를 복원하고 전승시켜 상품화되어 소득으로 이어지는 장이 소규모 농촌가공식품업체이다. 또 새로운 소재와 가공법을 조합하여 퓨전이나 변형 또는 완전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소재생산을 통한 특화상품으로 개발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다

소규모 농촌식품가공이 활성화되는 최근의 동향을 보면 20여 년 전 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성장하면서 전통의 맛과 멋을 살려 성공한 업체와 사업적 판단을 잘못하여 실패한 업체들로 다양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품 문제보다 사업적인 요인으로 법률이나 제도의 무지로 인한 대표의 잘못된 판단이 각종 벌칙 등으로 경영애로 겪었으며, 자금의 운용을 잘못하여 부도가 나기도 하였다.

또한 대표자의 고령화로 2세대의 경영 승계가 순탄하지 않아 제품의 질적 하락과 원료의 변경, 제조과정의 숙성화로 원가절감 및 판매촉진에 집중하다보니 품질의 유지가 어려워져 고객의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았다.

소규모 식품업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창업과 사업운영 모두 중요하다. 창업을 이루기 위해 자금 및 기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창업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창업업무에 매달려 생존의 줄다리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창업에 수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기란 쉽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 동안 투자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2.6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의 애로점 조사결과

창업의지를 가진 농민 또는 기관 사업담당자의 설문과 면접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정리하여 간추린 결과가 다음과 같다.

1.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시 폐수배출업소 분류에 따른 공장설립 불허가
2. 폐수배출업소에 따른 처리시설의 고액투자
3. 복잡한 행정절차 및 서식작성 등 난해함
4. 창업관련 지도 또는 지원기관의 부재로 여기저기서 단편적인 정보만 획득
5.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지적사항 보완(식품위생법 등)
6.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어려움
7. 창업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이 없거나 부족함
8. 마케팅계획 등 사전 계획수립의 지도가 필요함
9. 품질검사, 표시사항 에 따른 벌칙 등에 대한 리스크
10. 판매처 개척 및 관리에 따르는 노하우 없음
11. 제품 클레임 등 소비자 고발 및 항의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름
12. 적정 시설 및 설비의 규모 결정이 어려움
13. 창업을 위해 지도해주거나 지원기관에서의 지원 정보 모름
14. 지원제도의 활용 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 1인 창조기업의 정의 및 지원정책

2.1. 1인 창조기업의 정의

‘1인 창조기업’이란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한 1인 사업가 또는 기술자’를 망라하는 용어로, 최근의 소비 추세인 다양화, 고품질화, 소량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체로 인식되면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선진국으로 접근해 감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부문에서도 전통적인 식품기술을 가진 전문가나 새로운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1인 창조기업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2. 1인 창조기업의 분류 - 중소기업청

아직까지 농식품 부문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의 대상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 상업화

각종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Idea Biz Bank)” 구축과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상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구축·운영 등이다. 등록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2009년 275억원)을 통해 소비자평가·사업화기획·마케팅 등 외에도 상품화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까지 일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등이 등록된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의 장’ 주선 및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동 중인 지식거래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즉 비즈니스 수익 모델만 있으면 개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 전통식품과 공예품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우리의 식품과 공예품을 상업화 및 글로벌화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이러한 기업이 활성화되면 농어촌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창업

과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전통식품 및 공예품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전통식품 제조업이 손쉽게 창업하여 농촌지역 및 자택에서 전통식품 제조·판매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통식품과 공예품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S/W·디자인·번역

과거에 ‘프리랜서’의 범주로 불리던 것도 1인 창조기업의 영역에 해당된다. 정부의 성공 사례로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전문 웹디자이너이자 주부인 강혜진씨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상은 주로 웹디자인을 포함한 각종 디자인 제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제작이 가능한 자, 통·번역이 능통한자도 1인 창조 기업의 범주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프리랜서로 불안정하고 법적으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러한 비제도권을 1인 창조기업이라는 제도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편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4) 문화 콘텐츠

디지털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창업비용은 역으로 낮아지고 있어 1인 창조기업들이 자라나기 쉬운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콘텐츠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어 이에 적응하는 데에는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빠르며 감성적이고 독창적인 기업들이 유리하다. 문화콘텐츠란 독창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기존 미디어 및 뉴미디어(모바일, 웹, DMB, 와이브로, IPTV, PMP)를 통해 유통, 배급이 가능한 프로젝트 및 상품제작이 가능한 창작물로 영상,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융합형 인터랙티브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컴퓨터 그래픽 분야인 CGI 활용 창작물이나 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비디오, 스마트폰, IPTV 등의 플랫폼 기반 게임 콘텐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관련 창작활동이 가능하고 산업 혹은 비즈니스로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상적이다.

2.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데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 현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이디어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이 있다. 2009년에 상업화 지원사업으로 2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등이 등록된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의 장’ 주선하고, 민간에서 활동 중인 지식거래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조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품질인증 시 공장심사 기준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즉석 판매 및 제조 대상품목에 간장·벌꿀 등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으로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법인 설립 시 부담해야 하는 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휴·재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토록 온라인화를 추진하는 정책도 가능하다. 또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정부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공공시장에 1인 창조기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 전산분야 공공구매 시 직접생산 확인 기준, 디자인 개발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등에 대한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1인 창조

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S/W·디자인·번역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총비용의 10%, 300만원 한도)를 지급함으로써 대기업의 아웃소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넷째, 1인 창조기업의 경영 안정과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투자 후 일정 시기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 또한, 명인 및 명장 등 무형의 가치 특성을 반영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최대 1억원까지 보증)"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의 경영 안정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 참여하는 전용 R&D사업인 C&BD(Creativity & Business Development)와 명인·명장 등의 기술·기능·노하우의 승계 및 전수가 가능토록 견습생제도를 도입하여 명인 및 명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제 3 장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판매사업 지원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농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컨설팅사업(식품컨설팅, 유기가공식품컨설팅, 경영컨설팅)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여성창업지원사업(손맛사업장)이 농촌의 여성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 시행중이다. 그러나 농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에 적용하기에 규모의 한계가 있다. 물론, 농가형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 기존의 영세 식품사업들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농촌의 소규모 농가에게 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창업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 및 바이오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재고하기 위하여 전국 9개 대학교 및 연구소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나 농업과 관련된 자재, 소재, 기계, 가공식품 등 다양한 업종, 품목에 대하여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시제품의 제작, 마케팅, 법률, 기술, 특허, 회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후 2년 내 기업도 보육가능하며 창업 전에도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소규모 농산물가공업체도 보육가능하며, 생산현장에서 컨설팅 및 기관업무도 도와주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창업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기능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MOU를 통한 업무협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컨설팅 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식품 컨설팅,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농업경영 컨설팅 등이다. 하지만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컨설팅사업은 없다.

식품컨설팅사업은 대상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와 외식업체이며, 컨설팅 내용도 경영, 마케팅, 외식업체 운영 등으로 농업인이 산지에서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 23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유기가공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 가공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주대상이 유기식품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비해 그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및 생산조직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컨설팅할 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내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대상이 되지만, 매출액 규모가 2억 원 이상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3-1.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컨설팅 지원사업

	식품 컨설팅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경영 컨설팅
지원대상	식품 제조 및 가공 업체, 외식업체	유기가공 식품업체	원예, 특작, 축산 농가 쌀 전업농, 가공업체 APC 및 RPC 등
지원내용	컨설팅비용 50% 지원 (업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비 100% 지원 (업체당 500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1,2년차: 국고(50%), 지방비 (20%), 자부담(30%) 3년차: 국고(40%), 지방비 (10%), 자부담(50%) 4년차 이후: 전액 자부담
지원분야	경영 일반	유기가공식품 인증	경영관리(재무/판매 관리)

마케팅 외식업체 컨설팅	제도 문서 관리 현장 관리 등	생산관리(원료 조달, 위생관리, 생산계획, 장비 관리, 부적합품 관리 등)
-----------------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 가운데 식품 가공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뿐이다. 이 사업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나 어업인 및 후계자, 영어조합법인 등이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산물 가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가공까지 포함하는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비해 사업내용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대규모 수산가공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품가공을 주대상으로 하는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과는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이 적극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농촌여성창업지원): 농촌진흥청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오고 있는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장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의 대상을 농촌여성으로 한정하였던 데 반해 신규사업은 그러한 제한을 없었다.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도 전통식품 등의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작업장 및 시설과 장비 구입비, 유통개선에 필요한 비용,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 조달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인 창업과 사업활동하는 소규모 식품제조농가와 차별화되고 사회적(공익적)기업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지역특화 사업이나 향토산업 등과

연계되어 개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 문경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모델예 (01년 설치)

○ 주요기능

- 지역 특산물 상품화 - 가공기술개발, 교육, 기술이전
- 농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 창업컨설팅, 보육사업
-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리
- 애로기술상담 및 연구지원사업

○ 연구인력

- 전담부서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농산물가공담당
- 연구인력 : 지도사 2인, 연구원 2인, 지원인력 5인

○ 시설 및 기자재

- 주요연구시설 : 부지 11,511m² 시설 795.2 m²
- 가공개발실, 과육가공실, 주스플랜트, 원료실, 가공교육장, 실습실 등
- 과일가공 주스플랜트, 오미자 가공프랜트, 분말플랜
- 보유기자재 : 100여종

○ 운영체계

- 자가생산 농산물 가공희망농가 창업보육 : 기간 1년
- 가공지원센터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 문경위생 076호
<제조원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판매원 : 참여 농업인>
- 창업 보육기간 내 사업성 분석 등 정밀 검토 후 가공창업 지원실시

○ 성과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개발 : 4개 분야 120점

-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 기술이전 54건, 상품화 18건
- 개발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 상표등록 60점, 특허출원 12건
- 창업보육 및 창업지원 : 보육 중 7호, 창업 62호
- 농산물가공 애로기술 및 상담 및 해결 : 60건
- 가공마인드 형성 및 기술교육 : 지산지소반외 5개반 2,200명 교육

2.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2.1. 창업컨설팅: 중소기업청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경영·기술 지도 등에 대한 창업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이후 7년 이내인 창업자가 대상이 된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컨설팅 비용의 7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있어야 되므로 소규모 식품제조농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1인창조기업협회에서 컨설팅사업을 준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인창조기업협회와 연계하여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및 경영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2.2.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사업: 경기도

경기도는 지자체로써 경기도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도사업과 일반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사업이다. HACCP 구축사업은 자부담 1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업체당 지원된다. 일반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은 업체당 48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

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전통식품에 HACCP은 도입되면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계적이고 대량화 되므로 푸근한 시골집의 이미지를 갖기는 어렵다. 소규모 식품 제조농가에서 HACCP 도입은 과잉투자로 연결될 뿐이다.

3. 해외 사례: 일본

3.1. 일본에서 농산물가공에 대한 지원정책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단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으로써 인정하고 농업인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법인이어야 하며, 농산물 가공이 해당법인의 경영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법인이 농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면, 해당 법인은 저리로 융자(그 외의 농업후계자와 비교해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특례(할증상각제도), 농용지의 이용집적 촉진을 지원, 농업인연금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1. 저리자금 융자

일본 정부가 농산물 가공법인에게 지원하는 저리 융자자금은 구체적으로 ‘농업경영 개선 관계자금’으로 여기에는 농업근대화자금,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 농업개량자금 등이 포함된다.

(1)자금의 내용(각 자금을 연계하여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자금수요>

A. 농업근대화자금: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기자금(기계, 시설, 장기운전자금)

○ 상환기한: 15년 이내

○ 금리: 차입 시 금리는 금융정세에 따라 변동. 최신 금리는 융자지관에 조회.
(참고: 2004년 2월 19일 현재 인정농업인 0.70~1.35%, 그 외 1.40%)

○ 융자율: 인정농업인 100%, 그 외 80%

○ 기본적인 융자한도액은 개인 1,800만엔(법인 2억엔).

B. 농림어업금융공공자금: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에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환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고, 농지 취득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농협 등이 융자할 수 없는 경우)에 농림어업금융공고가 융자하는 장기자금(농지, 기계, 시설, 장기운전자금).

- 인정 농업인: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super L자금)
- 그 외의 농업 후계자: 경영체 육성강화자금
- 상환기한: 25년 이내
- 금리: 차입 시 금리는 융자기관에 조회.

(참고: 2004년 2월 19일 현재 인정농업인 0.70~1.35%, 그 외 1.40%)

- 융자율: 인정농업인 100%, 그 외 80%
- 기본적인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 5000만엔 (법인 5억엔).

<특별한 자금수요(신작물분야 · 유통가공분야 · 신기술에 도전할 경우)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인정이 필요.

C. 농업개량자금: 현으로부터 직접 대부하는 적대방식과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대방식 제도.

- 상환기한: 10년 이내
- 금리: 무이자
- 융자율: 인정농업인 100%, 그 외 농업후계자 80%
- 기본적인 융자한도액은 개인 1,800만엔(법인 5,000만엔).

※ 이 외에 인정농업인은 자금 융통의 단기운전자금으로서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농업경영 개선축진자금(super S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2) 담보

위와 같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적 담보와 농업신용기금협회의 보증이 필요하다.

3.1.2.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자금

창업활동 시작과 창업 후에 새로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할 때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도 있다.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농업개량자금에 여성창업용 우선 지원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무이자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으로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은 (1) 인정농업인, 기타 농업후계자이고 자신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경영을 시작하려는 농업후계자로서 노력하고자 하는 여성, (2)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여성이다.

구체적인 요건

<대상자>	<필요한 조건>
① 인정농업인	
② 인정취농인	· 경영개시 후 5년 이내, 또한 취농계획 인정 후 10년 이내
③ 주업농업경영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법인의 경우는 농업 관련 매출고가 총매출고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것, 또는 농업조수의 200만엔 이상(법인의 경우는 1,000만엔 이상)일 것 · 청·장년(18세이상 60세미만) 가족농업종사자가 있을 것(법인의 경우는 청·장년자 상시고용자가 있을 것) · 60세 이상 개인농업인의 경우는 후계자가 있을 것 · 부기기장을 하고 있을 것(실시할 전망이 확실한 경우를 포함)
④ ①로부터 ③(가족경영에 한함)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경영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 주재권이 있고, 또한 그 부문의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 및 수익처분권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구분경리, 부기기장, 농업용 계좌 개설 등)
⑤ ①부터 ④까지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임의단체	· 대표자, 대표권의 범이 등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규약을 가지고 있을 것
⑥ 도입계획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하는 에코파머(eco-farmer)	

채소, 쌀 등 농산물 직거래판매와 농산물가공품을 판매에 필요한 절차로 (1) 쌀을 소비자에게 일정수량(연간 20톤) 이상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 농정사무소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다음 13가지 식품은 제조 또는 가공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려고 할 경우,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우유, 산양유, 탈지유 및 가공유, 크림, 아이스크림, 무당연우, 무당탈지연우, 발효유, 유산균음료 및 유음료,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어육반죽제품, 용기포장 가압가열 살균 식품

이러한 13가지 식품은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방지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한 과정을 거쳐 제조하거나, 혹은 가공한다는 취지를 담아 신청하고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해당하는 식품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현 지사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창업이 있다.

생선, 채소, 채소절임, 건어물, 곤약, 잼 등은 판매할 수 있지만 된장이나 해산물 절임(어패, 조개, 해초 등을 간장이나 설탕에 절여 장기 보관한 식품)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아래의 34종이다. 그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현 지사가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 신고하여 현 지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 1회 정도의 이벤트로 판매하는 것은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빵 제조업을 포함한 과자 제조업, 팔고물류 제조업, 아이스크림류 제조업, 된장 제조업, 간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납두(메주콩을 발효시킨 식품)제조업, 반찬 제조업, 통조림 병조림식품 제조업, 면류 제조업, 소스류 제조업, 어패류 판매업, 어육가공식품 제조업, 어패류 경매영업, 우유처리업, 특별우유 착취처리업, 유제품 제조업, 집유업, 계란류 판매업, 식육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제품 제조업,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청량음료수 제조업, 유산균 음료 제조업, 빙설 제조업 빙설 판매업 식용유지 제조업, 마가린 또는 쇼트닝 제조업, 식품의 방사선 조사업, 주류 제조업, 첨가물 제조업, 음식점 영업, 커피숍 영업

3.2 우에노가 쌀빵 가공부회 가공사례

교토부 마이즈루 시(市) 가좌지구에 위치한 우에노가는 약 160년 전 에도 시대에 건축된 모쥼민가(벚짚이나 띠로 지붕한 집)로서 2003년에 시에 기증되어 마이즈루 시(市) 당국에 의해 개수 및 복원 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개발 판매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2004년 4월에 ‘우에노가 쌀빵 가공부회’가 설립된다.

‘우에노가 쌀빵 가공부회’는 이후 쌀가루 식품보급추진협회의 기술 지도를 받아 쌀빵 제조기술을 취득하고 2004년 4월에는 부회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쌀빵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현재는 시내 전역에 직판장이 운영될 정도로 ‘우에노가 쌀빵 가공부회’의 쌀빵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16종류의 쌀빵과 주문형 케익이 생산되고 있으며, 하루 150개 정도만 한정 생산한다. 우에노가 가공부회의 상품은 오전 중에 매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에노가 가공부회는 철저하게 고품질 소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지역형 가공업체라 할 수 있다. 우에노가 가공부회는 매월 1회 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 자사의 상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우에노가 가공부회는 생산되는 상품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 재배이력이 확실한 지역 생산농산물만을 사용하며 미분은 오사카부의 제분업자에게 가공 위탁하여 공급받는다. 1년에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쌀의 양은 초기에는 약 2톤 정도였으나 생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1인당 참여시간이 줄어들어 현재는 약 1톤 정도로 감소하였다.

우에노가 가공부회는 쌀빵의 가공 및 판매뿐만 아니라 쌀빵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산품과 지역산품 직판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 체험사업과 요리제공 서비스사업도 함께 겸하고 있어 농업, 가공사업, 관광, 서비스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에노가 가공부회는 쌀빵 가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지산지소를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 개발의 어려움, 생산비의 지속적인 상승, 참여인력의 노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력의 감소 등으로 향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3. 유즈노 법경 마을 가공사례

교토부 난단시 원부정 법경 마을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역산 유자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형 소규모 가공산업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대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농업개량보급소의 권유에 따라 지역공동소유의 40a 밭에 윤작작물로서 유자를 심는다. 초기에는 유자를 과실로만 판매하지만 유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성이 떨어지자 유자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후 1984년에 이 마을의 부인회를 중심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유자 가공품을 생산하게 된다. 참여자 수는 2004년만 해도 5명이었으나 세 명이 은퇴하고 현재는 2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자 잼과 유자 마말레이드, 유자미소, 청두미소, 흑두미소 등이며 역전 경도신광열촌에서 50%, 기타 농협판매장에서 10%, 호텔판매장에서 10%, 직판으로 30% 등이 판매된다. 200g짜리 1병은 세금을 포함하여 500엔, 2병은 1,000엔에 판매되며, 연간 판매량은 1,500~2,000병 정도 된다. 총 매출액은 유자 생산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간 120~200만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모두 무농약으로 재배된다. 기온차가 커 신맛이 뛰어나고 설탕이 좋은 유자만을 사용하며 상품을 생산하며, 설탕이 좋지 않은 10~20%의 유자는 목욕용 생과로 판매하고 있다. 가공용 유자의 지역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한다.

11월에 유자가 수확되면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가공이 이루어지며, 생산된 유자 가공품은 3월 말까지 판매된다. 시설의 가동은 5개월이 채 안 되며 따라서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머지 7개월은 (재)원부정농업공사가 운영하는 역전 경도신광열촌에서 초밥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력의 연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의 유자산업은 산미(신맛)가 강하고 점성이 많은 인근 마을 유자와의 경쟁, 신규 묘목 식재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 부족문제, 해거리 문제, 제품 다양화 문제, 시설 가동률 제고 문제 등의 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제 4 장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및 활성화 방안

1.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정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향후 정책이나 지원방향 및 대상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에 대한 정의는 식품업체를 경영할 주체, 원료, 위치 혹은 지역, 제조장의 규모, 종업원 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의 정의

농촌에서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연결한 토지에 위치한 66㎡(20py)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두는 사업체를 말한다.

소규모 식품업체로 한정하는 이유는 폐수와 크게 관련이 있다. 소규모 식품업체가 설립될 것은 농촌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은 농업생산기반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환경오염 유발 원인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식품업체가 폐수배출업체로 분류되면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지역 및 위치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 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경영 주체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정의에 나타난 경영주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 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료 농수산물의 범위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산물 혹은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국산 농수산물이 무엇인가라는 점과 국산 농산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을 때 주원료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내산 농산물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산 농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식품 제조과정에서 각종 부재료(소금, 설탕 등)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 농산물로서 지역(시·군) 내 생산한 농산물 90% 이상 사용될 때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식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단, 국내 또는 지역내 생산이 없는 원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설의 범위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가운데 농업용 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농업용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식품제조농가에서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설비와 장치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매출액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농업활동의 연장선에서 인정하여 농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를 구매하여 연중 생산·판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시설의 규모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를 66㎡ (20py) 이내로 정의한 것은 식품 제조 관련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용 시설로 구분되면 66㎡까지는 신축이나 증축 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세법」 - 농민주

3.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 기준

가. 건물

- (1) 면적 (가) 국실 6㎡ 이상(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나) 담금실 10㎡ 이상(밀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최소규모)
- (다) 증류실 8㎡ 이상(발효주류 제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2. 생활 기반 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

나. 주택의 증축

-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주류제조장의 경우 농민주 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면적을 최소 24㎡ 이상이면 제조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한정하여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사업장과의 구별을 둘 수 있다.

■ 종업원 채용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식품업이므로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도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품제조농가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제조농가는 1인 기업형태를 띄고 있으며 가족노동력을 주로 하는 가족회사(기업)이다. 생산하는 제품은 연중 판매가 가능하나 원료의 투입 시기나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 연중 15일 이내로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매출액 규모(규제 내용은 아님)

「소득세법」 및 시행령 상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우, 가능한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매출액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신설 1998.12.28, 2006.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 원

2. 법적·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1. 시설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어촌에서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농어가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의 시설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하였다. 즉,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식품산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이 아닌 지자체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되도록 하였다. 문제는 「식품위생법」상의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시설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 장이 조례로 지정하기만 하면,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조례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설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

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 식품을 제조·판매·가공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서 가능한 몇 가지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표준시설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목이 다르면 생산시설 및 규모 등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국장, 장류, 과일가공품 등의 생산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유사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지형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지역적인 특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표준시설 기준을 제시하는 적절하다.

표준시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품목별로 표준시설안을 제시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관련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둘째, 표준시설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식품위생법 상의 특례규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품목별로 표준시설안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특례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기준안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소규모식품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한 업체에서 위생상의 문제 혹은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업계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및 위생의 최저수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

소한의 시설은 설치될 필요가 있다. 표준시설안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표준시설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식품 제조시설을 농가 시설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2.2. 식품업 주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의 법체계에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자가 생산한 농산물 혹은 다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농업인의 범위와 생산자단체의 범위이다.

「식품위생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령들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소규모 식품업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관련 법규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상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체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식품위생법 상의 특례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7~80년대 산업일꾼으로 청년기에 도시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 후 생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배웠고, 지역의 전통식품을 일상적으로 먹어 왔다. 이들은 선대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통식품의 맛과 제조법을 전수받은 세대이다. 식문화의 계승이나 전통음식 체험교육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을 아는 사람이 건강할 때, 즉 정년퇴직-귀농 세대가 농촌으로 돌아올 때 전통식품의 지혜를 발굴하여 제품화하고 판매를 통한 맛의 전달과 계승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농식품업체를 귀농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소득원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정년퇴직-귀농자들에게 소규모 농식품업체를 통해서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려면 창업의 걸림돌 제거 필요하다. 농촌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기존 사업장의 후계문제도 발생하거나와 농촌 공동화문제에 귀농자들은 좋은 해결방안 될 수 있고, 이들이 귀농 후 안정적인 소득개발에 농산물가공식품 제조는 훌륭한 방법이 되므로 일거양득 할 수 있다.

2.3. 폐수 관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장에서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규제가 폐수 관련 법규이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창업하려는 제조장(공장)의 입지는 대부분 농촌의 농지(산지) 등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식품업체가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주거지 근처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농식품가공 창업희망자들이 창업을 하려 하지만 공장(제조장)허가가 되지 않는 토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나 산지를 피해 제조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폐수를 배출(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즉, 폐수 배출이 허용된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식품가공

업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로 분류되면 폐수처리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폐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업인은 상당한 비용 증가 부담을 가지게 된다. 물론,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폐수 배출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지나 주택 근처에 제조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은 그대로 남는다.

또한, 식품을 가공 및 제조할 때 발생하는 하수는 원·부재료와 기계·기구류의 세척수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척수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고농도의 염류나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폐수(廢水)가 아닌 오수(汚水)로 충분히 취급될 수 있는 하수이다. 만약 세척수를 폐수가 아닌 오수로 인정받는다면 실제 배출되는 폐수 산정량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척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을 제외할 경우 떡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떡을 찌고 남은 물로 양이 많지 않으며, 청국장을 발효시키고 남은 물도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세척수까지 폐수로 분류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폐수 배출량이 1일 0.1m³ (100ℓ)를 초과하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농지법」에 따라 농지나 산지 등에 폐수 배출시설은 설립할 수가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수 사용이 제한적인 증석가공식품이나 한과, 부각 등의 제조장에 대하여 폐수 발생량을 100L 이하로 인정하여 공장설립 허가해 주지만, 100L이상의 폐수가 발생이 예상되면 폐수발생업소로 분류하여 허가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제조에 관련하여 사용된 물에서 제품에 유입되는 물량을 제외한 수량에 대하여 폐수로 계산함에 따라 제품의 생산량에 상관없이 원료 및 기계류의 세척수만으로 100L를 훌쩍 넘기게 되어 여지 없는 폐수발생업소로 분류되고 만다. 예외규정을 두어 발생하는 폐수가 항상 배출수 기준(오염도) 이하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나,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단 10분의 작업만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활용하여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농촌에 설립되는 소규모 식품업체를 폐수 배출업체로 분류하면, 농촌 지역에서 창업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농촌의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배출되는 물을 폐수(廢水)가 아닌 오수(汚水)로 분류되도록 하면 된다.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이 섞여 배출된 물로 정의되는데, 소규모 식품업체의 식품 가공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은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오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하수도법」

제2조 (정의)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소규모 식품업체 혹은 1인 창조기업에서 식품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을 폐수가 아닌 오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소규모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등은 가정의 오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염물질의 농도는 오히려 낮을 수 있다.
- ② 생산되는 최종제품의 총량과 연중 가동률이 매우 낮아 연간 총발생수량이 적다.
- ③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오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오폐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④ 소규모 가공업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활동” 혹은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면 폐수가 아닌 오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제조장을 “농가부속시설”로 인정할 경우에도 오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⑥ 현 폐수 산정기준에 두부 제조 시 발생하는 냉각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면 제외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처럼 예외조항으로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가공장의 배출수를 오수로 취급하면 가능할 것이다.
- ⑦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⑧ 소규모 식품업체에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의 구분하여 그 규모를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정의를 단서로 함, 농업인, 농가내, 국산, 66㎡, 10인 이내) 폐수의 발생량은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배출되는 물을 오수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① 식품 제조업 허가가 용이해질 수 있다.
- ②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③ 농가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설계에 포함시켜 저자본 투자로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합병정화조 등 오수시설의 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표 4-1. 폐수배출업체와 오수배출업체 사이의 시공비 비교

비교	건축면적 발생량/1일 최대	시공금액	비교
오수	주택 100㎡ 이하	200만원 이상	1톤 정화조
	주택 100㎡ 이상	300만원 이상	2톤 정화조
	상가 50인, 2톤 이상	600만원 이상	10톤 합병정화조
폐수	5종 20톤 이하	2,000만원 이상	하수관연결-침전조
	5종 20톤 이상	1억원 이상	단독처리 - 폐수처리시설 폐수위탁처리
	4종 이상	2억원 이상	폐수처리시설 필수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폐수 처리문제이다. 폐수 문제 때문에 창업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창업 이후에도 시정조치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정의로 규모 제한)에서 발생하는 물을 오수로 인정되도록 하면 폐수배출업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쉬워지면서 농촌에서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작업장을 신축할 경우 허가의 어려움을 들어 건축업체에서 별도의 컨설팅 용역으로 부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시공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비로 청구하므로 6천만원 정도의 작업장을 신축할 때 3백만원정도이면 충분한 비용을 1천만원이상 지불해야한다. 창업 사업계획승인제도를 활용하면 일관의제처리 받을 수 있으나, 폐수와 관련된 기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건축업체에게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2.4.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 가운데 모든 식품이 식품으로써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식품에 대한 표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2009.08.24, 개정)에 식품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자체에 대한 정보, 식품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 영양에 대한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규모 식품업체에는 애로점이 되고 있다. 총 77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를 생산자가 직접 챙겨가면서 표기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또한 영양과 관련된 내용은 외부에 위탁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보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식품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잘못 표기하거나 잘못된 규격을 이용하여 행정제재를 받거나 인쇄물을 폐기 혹은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식품업체는 인쇄물을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인쇄물이 다시 나오기까지 판매하지 못한 것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표시사항이 복잡하여 생산자가 제대로 표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농산물 가공식품 또는 전통음식 등에 대한 표시기준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식품의 표기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시 관공서에서 식품 표기에 대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각지역의 농업기술센터 혹은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 표시광고심의제도도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사전에 식품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주어 사후에 잘못된 표기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표시광고 심의를 통해 기업의 불편을 사전에 막아 줌으로써 제품개발 및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 영양성분 등은 여전히 외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지원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①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을 지정 또는 위탁하여 심의토록 함
- ② 심의비용을 무상(지원)으로 함
- ③ 품목별 표시기준예시를 작성하여 참고하도록 함
- ④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와 함께 영양성분표시 시험에 관한 시험료 지원

그림 4-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처리절차

+ 표시광고심의 안내

·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광고심의처리절차



· 심의대상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 신고 수리된 경우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것으로 같음.

·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을 제16조 및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심의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수수료: 100,000원 (사업자가 부담)

2.5.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농촌에서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정과 제약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사업체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농업인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창업절차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허가의 매단계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한 번 서류가 접수되면 모든 행정절차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농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규정을 준수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 발생이유로 식품제조공장의 허가가 거부되는 지역이 많다.

법률적인 부분의 해결방안을 사업자가 모두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현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전담직원(어드바이저)을 활용하여 사업성 검토 및 법률적인 점검을 통한 창업가능 여부를 타진하도록 해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에서 제시하는 일괄처리에 관한 법률적 세부내용에 대하여 거절사항을 확인을 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적격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 상황을 강구하여 창업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소규모 가공업체 창업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창업과 동시에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행정절차 수행과 이후 제품의 생산, 포장, 유통에 관한 법률적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농업인이 각종 규제와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창업 이전 및 이후에 창업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규제나 기준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컨설팅도 필요하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 경영, 법률별로 전담직원을 두기 어렵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규모 농산물 식품업체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 유통기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개별적인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개별업체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법률이나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기존사업자들도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제조일 표시 등을 정확히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창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식품 관련 표기내용 가운데 제품의 포장에 관련된 라벨을 제작하는 것과 품목제조 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특히 어려워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는데, 농촌지역의 소규모 식품업체가 개별적으로 유통기한을 책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신상품의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제품의 유형별, 품목별에 따른 “식품의 유통기한의 설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농가형 제품군의 경우 다른 식품의 “식품의 권장유통기한” 내용(품목)을 참고하여 그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면, 생산자가 권장 유통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고 행정적인 신고도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7. 책임이행 위험과 PL(Product Liability) 보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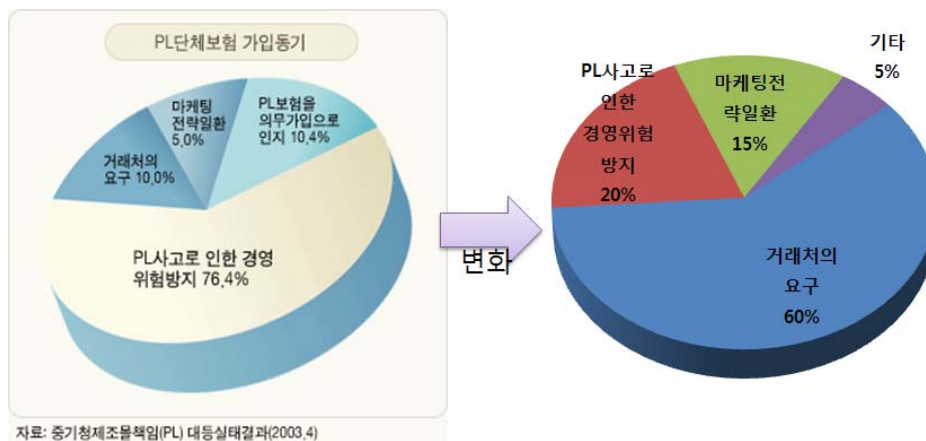
제조 식품의 결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지식이나 인적조직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규모 업체가 해당 사건이나 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사소한 배상 책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송비용이 엄청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고는 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우에도 경영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조물 결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PL(Product Liability)보험 가입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찍부터 제조물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관련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Strick Liability)을 지우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의 소규모 식품업체가 PL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설령 식품 결함에 의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PL클레임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 PL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업체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PL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금과 함께 합의 및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까지 보상하므로 식품업체의 경영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림 4-2. PL보험 가입동기 변화 추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이들 업체의 PL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제조업체에 PL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제주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제주도는 도내 사업장(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 및 가입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80%(2007년 50%)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1기업당 지원한도액은 1,000,000원(총사업비 30,000,000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지원시책으로 1999년 8월부터 PL공제(단체보험)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이용하면 업체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20~28% 저렴한 비용으로 PL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쟁의 조정, 변호사 상담, 자문단 운영, 교육 실시, 검사비 지원(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PL보험 가입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농촌의 소규모 식품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업체의 보험료가 100만원 전후이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75%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다음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부가 지정한 소규모 식품업체(중소기업 및 소기업, 1인창조기업)
- 국내산 원료(농림수산물)를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
- 수출 농수산물 업체(비가공품도 보험가입대상이 됨)

3. 경영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1.1. 원료 확보 및 원재료 비용 절감 문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의식조사 결과 ‘원료비의 적절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공업체들이 원료비의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과류 업체를 예로 들면, 현재 밀가루 가격이 kg당 약 570원인데 반해 쌀가루의 가격은 2,125원으로 약 3~4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포장을 해 마트 등의 소매점에 상품을 진열했을 때 경쟁제품인 밀로 만든 과자류와 비교시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료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공용 원료에 대한 구매비용 지원과 원료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제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내 생산물을 이용하고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 제품의 원료인증을 통하여 유기식품이나 친환경식품으로써 고급제품임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3.1.2. 노동력 조달 문제 및 해결방안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생산과정을 기계화하기가 쉽지 않아 일정 수준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물론,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농촌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상시 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는 수확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확 후 농한기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활성화되면 농한기의 유희노동력을 줄임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3. 판매망 확보 문제

창업 이후 농가형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의 개척이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는 대량 생산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업체에 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기존의 유통망과는 다른 별도의 판매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판매망이 주말을 이용해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과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타지역 주민들이다.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은 타지역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므로 농촌지역에 체험을 온 도시민이나 타지역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는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초기의 단기적인 성공에 힘입어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판매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업 초기의 단기적인 성공은 개점효과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1.4. 정부지원제도

정부는 1990년대부터 매년 ‘전통식품 개발사업’(농식품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전통식품 가공업체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지원하는 업체수가 많아짐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는 한정된 데 반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통식품 가공업체들이 판로 개척이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이다. 전통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사후 관리 소홀’이 ‘정부지원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농가형 소규모 식품산업은 기존의 전통식품과 차별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된 틈새시장으로 건강한 식품 및 소비자 주문형 식품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고조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식품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거나 최소화한 식품은 기존시장과 다른 틈새시장 혹은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주문형 식품 개발도 향후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소비자 스스로 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포함해 식품첨가물 등을 선택하도록 하면, 이는 대형 식품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이런 측면을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5. 기술력 부족

농가에서는 정량에 따른 개량적(매뉴얼) 작업 기준 없이 눈대중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나 맛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도 한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로 변질되거나 상품성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농가 스스로 자신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소비자에게 수용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손맛에 의존한 기술이 아니라 매뉴얼화된 공정에 따라 생산하여 품질과 맛이 일정하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최적화 기술이 개발되고 공개되었으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작업효율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소형화되고 저렴한 가공기계도 많이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규모가 작은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가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시설의 도입, 기술의 이전 및 전수 등에 대하여 일정 수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이나 기술 등의 도입은 농업인 개별적으로는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지역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 및 검토, 시제품의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 품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품질인증 및 관련 기술지원을 통하여 촉진시킬 수가 있다. 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농식품신제품개발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1.6. 교육 및 경영마인드 등 농업인이 가지는 문제점

현업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농업인 포함)들은 여유시간에 자기계발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창업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마인드 차이는 여기에 있다. 경영자로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분배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고용을 통해서 이루고 반드시 내가 할 일에 대하여서는 직접 이루어져 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인력

을 구입하여 수행하고 어렵거나 중요한 단계의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체되지 말아야 할 사안들이 단순한 작업에 밀려서 기한을 놓치거나 기회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마인드문제도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알지만 눈앞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되지 못한다. 소규모라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역할 중 교육부분에 이러한 마인드 함양에 관련된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초기의 경우에는 판매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기술을 강조하는 창업자들은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의 창업자 대부분이 자신의 기술력을 활용하거나 혹은 남아도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창업자들은 창업 이후 판매망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으로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2. 신상품의 시장개발

3.2.1. 신상품에 대한 시장과 기술의 벽 극복

일반적으로 신상품이 신시장을 형성할 때까지는 세 가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용성의 계곡이다. 유용성이란 어떤 도구나 인간이 만든 물건, 서비스를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때에 어느 정도 사용하기 쉬운가를 뜻하며 이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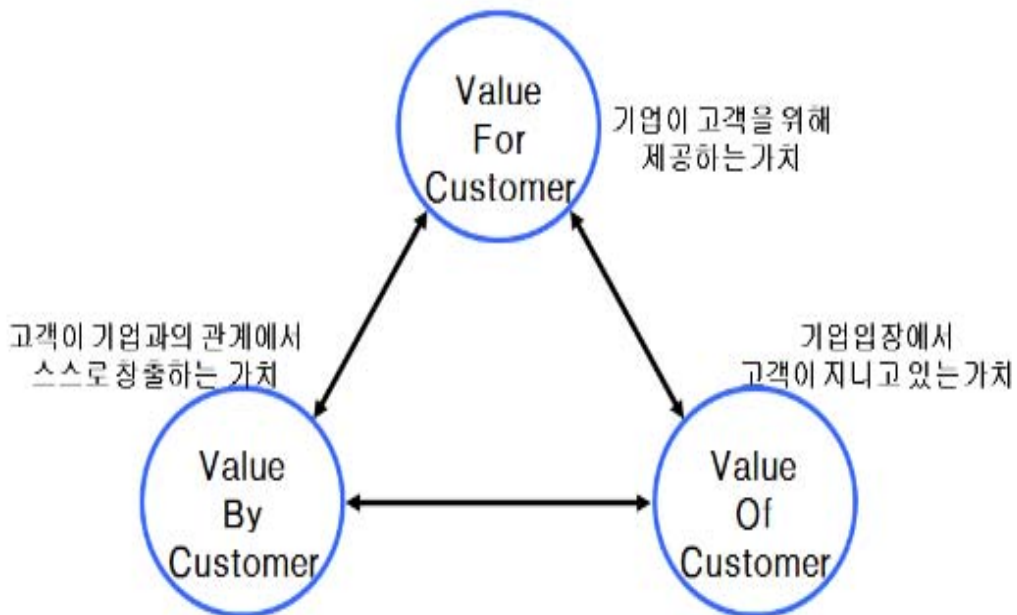
두 번째는 개발단계와 사업화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의 계곡이다. 상품의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화단계와 산업화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용성의 계곡이다. 신상품의 초기 수요자와 이후 수요자들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제품을 구매한다. 기술이나 제품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용적이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제품의 출시초기에는 혁신성을 중시하는 소수의 소비자에 의해 소비가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로 중심이 옮겨간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때때로 이 초기시장과 주류시장 사이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정체현상을 겪게

된다.

이렇듯 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현상을 가리켜 캐즘(Chasm)이라고 한다. 캐즘이론에서 소비자는 혁신자·선각수용자·전기다수·후기다수·지각수용자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신상품이 출시되면 혁신자와 선각수용자는 기술 애호나 잠재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전기다수 및 후기다수 계층은 실용적인 면을 중시해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고려한 뒤 실용적인 면이 증명된 후에야 구매하는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이 두 계층의 구매를 실현할 때 비로소 수익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이 두 계층이야말로 실질적인 구매층으로, 전체 구매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각수용자는 마케팅 효과와 관계없는 계층으로, 아무리 마케팅 노력을 하더라도 소용없는 계층을 말한다. 이 캐즘의 문제 해결이 수용성 문제 해결의 Key point라 하겠다.

3.2.2. 신상품의 고객가치 창출

그림 4-3. 고객가치 창출의 상호 관계



① 고객을 위한 가치(Value for Customers)

$$\text{가치} = \frac{\text{품질}}{\text{비용}} = \frac{\text{결과품질} + \text{과정품질}}{\text{서비스(or 제품)가격} + \text{서비스(or 제품)획득비용}}$$

고객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품질, 구입 과정 등 모든 것이 기대보다 높을 때 Value For Customer가 형성되며 기업입장에서는 결과품질 외에도 과정품을 높이거나 획득비용 감소를 통해 Value For Customer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과정품질 개선은 결과품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한다.

② 고객의 가치(Value of Customers)

고객생애가치라고도 하며 우량고객을 우대하고 수익성이 낮은 고객과는 이별하는 것이다. 잠재적 요구(Potential needs)를 찾아 고객을 세분화하여 Value of Customer를 향상 시켜야한다.



③ 고객에 의한 가치(Value by Customers)

$$\text{가치} = \text{【정서적 애착감} + \text{오피니언 리더십】} \times \text{【고객의 상황】}$$

전통적으로는 기업이 가치를 창조하였으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져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은 고객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가치창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4-4. 시장과 기술의 벽 (세 가지 죽음의 계곡)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까지는 많은 단계와 어려움을 거친다. 우선 연구 본격기에는 원리를 발견하여 연구를 시작하며 개발단계로 넘어가 개발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용성의 계곡에 빠진다. 이 유용성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개발단계에서 사업화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양산체제로 돌입해야 하는데 이때 경제성의 계곡에 빠진다. 규모의 경제 이론에 따라 양산체제를 실현하고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낸다면 경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단계에서 산업화단계로 넘어갈 때 수용성의 계곡에 빠진다.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선 신상품이 기존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존의 시장뿐만 아니라 신시장을 창출해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

3.3. 소규모 식품업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

3.3.1.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 열풍에 따른 수요 확대 ○ 건강식품 인식 ○ 다이어트 식품 ○ 선물용 인지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격 (대기업 제품의 3~4배) ○ 마케팅능력 부족, 판촉 및 홍보 부족 ○ 영세규모 ○ 유통체계 미비 ○ 동일업체 제품 맛의 불균일화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와 한류 열풍 ○ 지역 결합 관광상품 개발 ○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식품소비의 증대 ○ 양질의 제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간의 과당경쟁 ○ 소비자 입맛 및 기호도의 서양화 ○ 비싼 국내산 재료 ○ 재료의 생산량이 해마다 일정치 않음

<S-O전략>

구분	내용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한 시설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들이 업체 현장 방문 ○ 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마크, ISO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국내외 표준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도 제고 → 대형할인점 진출에 유리

<W-O전략>

구분	내용
다양한 소비자층 고려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젊은층, 외국인의 선호를 고려한 제품개발 필요 ○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용량의 크기 다양화 ○ 편의식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식품의 개발

<W-T전략>

구분	내용
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원료 확보(계약 재배)
품질 개선 및 명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제거하는 과학화 ○ 사업장별 맛의 균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맛을 살려야 함(조미료맛, 달짝지근한 맛은 삼가) ○ 유통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짠 맛을 줄이고 유통기간 연장 -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품과 용기개발 (바이오 용기)

<S-T전략>

구분	내용
<p>우수고객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특징(군소업체, 지방에 소재, 제품 특성 다양)에 따른 고객 확보 ○ 우호적인 소비자 확보를 통한 마케팅 전략 중요 ○ 재구매 및 소비자에게 추천 유도 <인터넷 활용> ○ 인터넷 구매자에게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유도하여 인센티브부여 : 마일리지 등 제공 ○ 소비자의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불만 접수, 피드백(게시판, 전자우편), 온라인 주문확인 등 신뢰성 제고 - 자사제품 사용자의 소비자 소감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의견을 업체 운영과 홍보에 활용 <업체방문 유도> ○ 소비자를 업체에 초청하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드는 과정 체험 - 제품의 차별성, 정성, 청결 등을 소개 - 선물증정 마케팅을 통하여 구전 전파 및 제품 추천 유도 <회원 DB 구축> ○ 구매시 간단한 제품설문지를 첨부하여 응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제품 구매고객 및 업체 방문고객 D/B 구축 활용 <사후관리> ○ 소비자 요구시 100% 리콜제 ○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꺼리 이메일 및 홍보용 팜플렛 제공 ○ 우수고객이 계절마다 지역농산물 제공 고려 ○ 동호회 조직, 오프라인 상의 미팅(지역관광 연계)
<p>홍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고유의 이미지로 ‘브랜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업체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연주회, 체험장) - 원료이미지 - 제조방법 차별화 이미지

3.3.2. 마케팅 활성화 방안

1) 마케팅 기반 조성

전략	방법	효과
규모의 경제	- 지역별 공동 마케팅 - 인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거래비용 절감 - 농촌경제 활성화
제품 차별화	- 지역특화 작목 활용 - 포장 차별화 - 신상품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 경쟁제품과의 경쟁력 확보 - 만족도 충족으로 수요확대
수요 확대	- 수출확대 - 식교육 및 학교급식 -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 국내농산물 수요확대(쌀 등) - 단기중장기 수요확대 - 농가소득 증대

2) 마케팅 4P's 전략요소 개선방안

구분	제품(Product)	촉진(Promotion)	유통(Place)	가격(Price)
세부 내용	- 지역별 차별화 - 품질 개선 - 신상품 개발 - 포장 차별화	- 광고 및 홍보 - 수출 확대 - 식교육 / 급식 - 이미지 제고	- 판로 구축 - 고정판매처 확보	- 지역별 연합마케팅 - 다각화 - 소포장 - 시설 자동화

3.3.3. 지역별 연합마케팅을 통한 구매력 및 상품 판매력 확보

대부분의 식품가공업체는 소규모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규모 업체는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교섭력도 떨어져 판매 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업체 측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 간에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지역별 연합마케팅이다.

지역별 연합마케팅은 지역내 업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교섭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업체간 출혈경쟁을 지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4. 학교급식 등을 통한 안정된 판매루트 확보와 식교육 실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제품 소비량은 거의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고 쌀 가공식품이 밀 가공식품에 비해 유소년층 인지도가 극히 낮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 쌀 가공식품의 홍보자료 배포와 현장견학 실시 등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증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안정된 판매루트를 확보함을 통해 업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 안전성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3.5. 지역별 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는 대부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의 유희노동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노동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나 농협 등의 공적인 기관에서 지역인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JA에서 인력정보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필요한 유희인력에 대한 공급시스템 확보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의 공급, 수급에 관한 비용 및 시간 절약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3.6. 수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판매망 확충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수출확대 의사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 수출방법, 수출루트 등의 관련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국내의 경우 새로운 수요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확대는 국내경쟁을 해외로 돌림을 통해 적정가격 확보와 수요창출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임. 소포장 기계의 도입 및 규격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수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정부 등에서 수출창

구를 열어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3.7. 판매대행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쇼핑몰 개설 및 운영에는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업체로서는 비용과 시간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통신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필요하다. 제품의 주문접수, 결제, 배송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갖춘 쇼핑몰 지원이 절실하다.

4. 행정적인 지원 방안

4.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역할 강화

현재로는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업체를 설립할 때 법적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윈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데, 각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조직이다. 더욱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농외소득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9조(사업계획 승인) ① 농업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를 위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 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전담직원의 부재
 - 다른 업무와 병행으로 전문성, 집중성이 낮아 한계가 있음.
- ② 농외 소득부분의 전체적인 로드맵 부재
 - 기술보급과 생화개선에 중점이 주어져 창업 관련 로드맵 부실
- ③ 농기계 위주의 임대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식품 제조설비가 없음.
 - 실습 또는 시제품개발을 위한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 농업인의 시행착오가 계속되어 중복투자 또는 잘못 투자되어 지원 설비 활용성이 낮음.
- ④ 창업(식품제조업) 관련 절차 및 법령에 대한 지식의 부족
 - 전담직원의 부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민원인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력으로 민원인의 불만이 됨.
- ⑤ 창업 관련 지도서 또는 참고도서 부재
 - 참고도서는 대부분 소규모가 아닌 중기업수준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전체 창업과정에 대한 내용보다 부분적인 내용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창업관련 지도에 애로점임.
- ⑥ 농업생산에 치중되어 토양분석실 등은 있으나 식품제조 관련 지원시설은 전무하여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음.
 - 농기구의 수리나 임대, 토양분석, 조리실습장은 센터에 설치된 곳은 있으나 식품가공이나 개발에 관련한 시설은 거의 없고 식품을 전공한 담당자도 소수에 불과함.

위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가공용 기자재 구비

농산물가공에 활용될 수 있는 기자재의 구비를 통한 시제품개발 및 제작할 수 있으며, 가공관련 장비의 임대를 통한 초기 장비 구입 없이 제품의 생산을 함으로써 초기투자비 절감과 장비적용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나. 가공 공간구비

준비가 미흡한 농가 또는 농업인의 시제품의 개발 및 제작 공간 확보와 초기단계의 제품생산 공장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기간별 임대사용으로 인허가 및 공장등록을 실현시켜줌으로써 사업성 확인기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다수 생산자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중복투자를 예방하여 효율성 상승과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및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하여 안전성 확보가 수월해진다.

다. 창업지원 로드맵에 따른 업무내용

- ① 관내 역량 있는 사업자의 발굴
- ② 지역 특산물 또는 전래식품의 가공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 ③ 사업계획 및 사전조사 지도
- ④ 사업타당성 및 시장조사
- ⑤ 아이템의 기술 검색 및 개발계획 수립
- ⑥ 소요장비의 구축 및 운용관리
- ⑦ 소요시설의 확충 및 운영관리
- ⑧ 포장관련 디자인, 표시법, 기술 등 조사
- ⑨ 매출을 위한 판촉, 홍보, 전시장 등의 마케팅 지원

라. 컨설팅, 교육사업 연계 방안

- ① 개별농가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센터에서 연계하여 전문가 확보
- ② 기업가(농가경영 포함) 마인드 함양을 통한 경제주체로서 의지고취
- ③ 시장 환경 및 정치, 법률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 확대
- ④ 개별요구 기술, 전문지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해결
- ⑤ 사업스킬 및 지역연대를 통한 원-원 전략 실행
- ⑥ 식품검사비(쿠폰) 지급을 통한 국가지정검사기관의 사업장관리
- ⑦ 각종 창업관련 지원 및 정보수집과 전달로 안정적인 사업 유지

마. 전담인력의 확보

식품 및 창업관련 전공자의 확보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 및 위생, 안전, 독성, 검사 등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바.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도 단위 농업기술원, (농업)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창업 및 식품업체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업무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소득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각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창업보육센터를 지방농촌진흥기관 외에 추가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기술적 한계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 내에 전문적인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창업보육센터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비해 가지는 큰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교육 강화

많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나 창업준비와 가공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역의 대학 및 기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 강좌를 열고 있으나 창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강의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강사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강사와 유대관계를 맺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창업 준비과정 및 식품가공 관련 기술교육이 강화되어 농업인들이 경영자의 마인드 함양과 시행착오 줄이기를 위해 강좌의 개설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회계의 개념없이 막연한 주먹구구식의 계산법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식품가공 또한 충분한 계획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준비의 기간 동안 창업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시장조사, 분석, 판단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역할은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평생교육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4.3. 창업어드바이저 활용 강화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업의지를 북돋아 주고 창업의 절차 및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지도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촌식품업체 창업 및 경영 어드바이저의 활동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생존 및 경쟁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드바이저는 지도직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거나 식품제조 기업경험이 많은 은퇴자를 고용하여도 될 것이며, 현직으로 식품관련 컨설팅 인력풀에서 활용가능하다. 이들 어드바이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상호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는 중매인의 역할도 하여야 한다. 어드바이저를 통한 도시 소비자교육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장단점의 분석,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소규모 농촌식품업체의 판촉현장이 될 것이다.

창업어드바이저는 창업매뉴얼 활용하여 창업관련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서 자금계획, 관련기술의 확보, 시장조사, 판매·마케팅 전략기획 등 창업과 관련하여 'A to Z'의 동행을 통해 시행착오에 의한 손실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드바이저는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와 관리항목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현재 귀농자 지원프로그램에 농가보수, 영농기반확보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규모 농촌식품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귀농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4.4. 소규모 식품업체의 제품개발지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제품을 여러 농가에서 생산하기보다는 차별화되거나, 특징이 다른 제품으로 개선이나 기존 유형과 다른 새로운 소재, 제조방법, 제품형태를 가진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료의 본질적 영양성분이나 기능성이 약화 될 것이다.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일반 유통하는 규모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하기 위해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공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품에 따라 즉시 가공을 통하여 상품화한다면 판매가 촉진될 것이다. 대량생산하여 재고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잉여수준 또는 계획 생산에 따라 제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한 농산물로 생산한 제품으로 인지될 것이고 지역거주 소비자들에게는 Local food로 접근하게 된다.

소규모이기에 농산물의 수확과 동시에 가공되어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지역에 방문하는 도시인들에게 산지에서 생산된 원료로 산지에서 가공된 농산물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의 의미가 필요 없으며, 방부제 등 첨가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최근 식품첨가물에 의한 오·남용 사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식품으로 선회하고 있다.

소규모 농촌식품업체는 장기숙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첨가물의 사용이 필요 없어진다. 이는 소량생산 당일판매 또는 유통 중 온도변화에 의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이 거의 없으므로 식품첨가물 없이도 안전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

아토피 등 식품에 유래하여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수입 밀가루의 원료처리에 수많은 유해성으로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소규모 농촌식품업체는 수입밀가루를 대신하여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때 많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가공기계류의 발전을 통해 소형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제품이 개발되어 소규모 농촌식품업체에서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밀가루 제품을 기피하게 되는 소비자들과 건강을 염려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밀대신에 쌀을 활용한 제품은 인기 있다. 대표적으로 쌀면, 쌀빵, 쌀고추장 등 밀을 사용하지 않고도 핸드메이드 또는 팜메이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다.

또 지역에서 재배하는 약초, 과일, 채소 등을 제품에 퓨전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막 생산한 신선한 야콘이나 보리싹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에 응용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되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일반적인 식품이 된다.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생활개선활동, 음식연구활동, 소득자원활동 등을 농업기술센터

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다 왕성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에 개량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Local Food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소규모 농촌식품업체는 고객으로 연결된 도시소비자의 '엄마'역할을 하여 다음세대에 전통식품과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는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

제 5 장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안) 및 창업매뉴얼

1. 소규모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 기준

1.1. 현행 시설기준의 문제점

소규모 (농가형) 식품업체의 경우 연중 지속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다. 계절 또는 농산물의 생산시기에 한정되어 제조하는 데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충족시켜 투자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한, 유형별 제품에 따라 소요되는 비품이나 구분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다류(녹차)제조 등은 간단한 소도구로도 충분한 제조장이 될 수 있다.) 지자체 장은 그 시설을 따로 정하여 시설기준을 축소 또는 간단히 할 수 있으나 지정되어진 곳은 없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

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1.2. 현행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상품목

- 품목별 필요/불필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예시)을 확립함으로써 농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안전성과 제품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식품 제조에 있어 기존 농가시설을 충분히 활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
- 기존 농가의 범주(부속시설)에서 해결함으로써 추가 자금조달을 최소화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한다.
- 품목별 제조공정에 따른 필수 생산시설 및 기기에 관련하여 기준을 정한다.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식품공전 상 소규모 농산물 식품제조업에서 우선 생산 가능한 품목

제 5. 식품별 기준	
2. 빵 또는 떡류	5-2-1
8. 엿류	5-8-1
13. 두부류 또는 묵류	5-13-1
16. 다류	5-16-1
18. 음료류	5-18-1
20. 장류	5-20-1
21. 조미식품	5-21-1
25. 절임식품	5-25-1
27. 주류	5-27-1
29. 기타 식품류	5-29-1

13. 표준공정도에 따른 시설 기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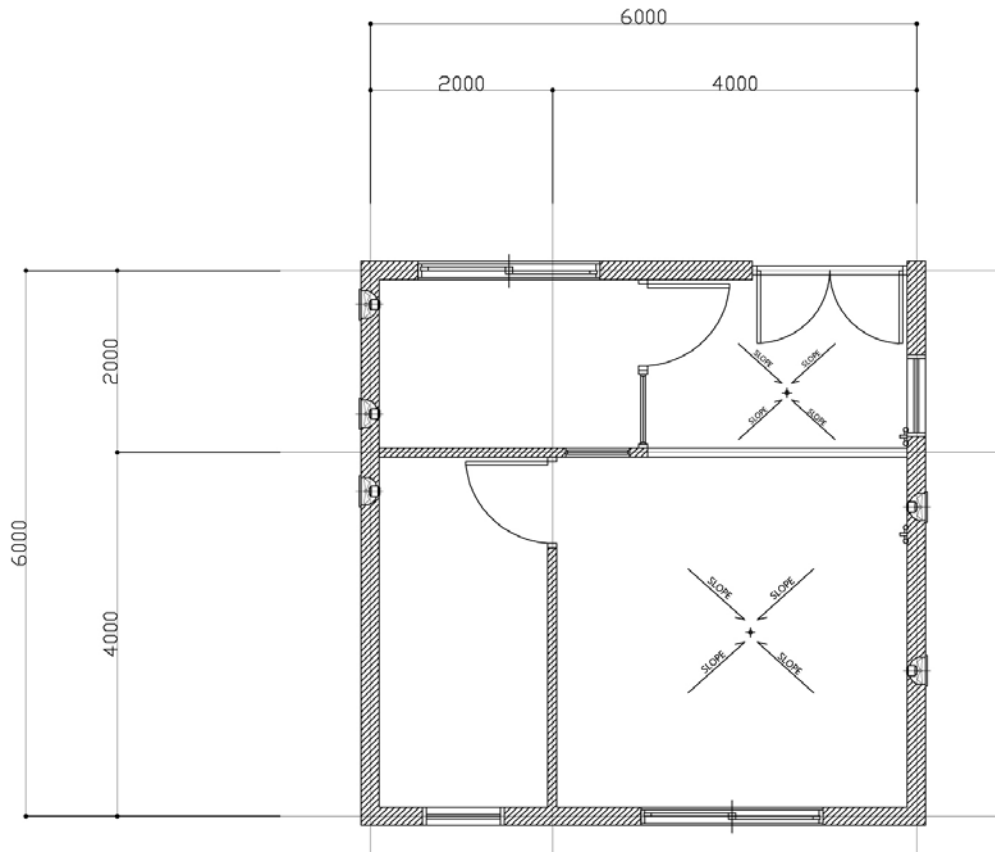
가. (공통사항)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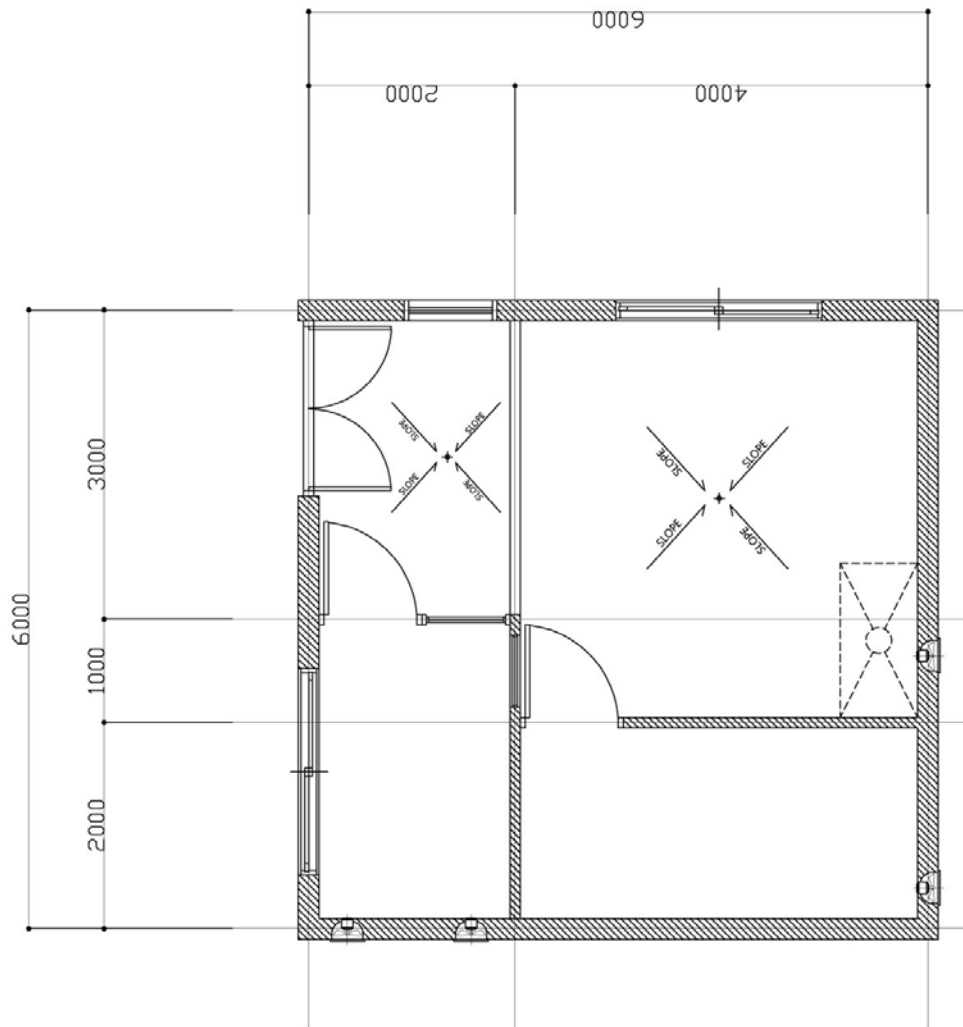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발생 가능한 공정) 등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 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출입구에는 작업자의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 할 것
- 직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 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 장독대, 옥외탱크 (밀폐)등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 제조장의 면적이 다른 부속시설물 면적과 66m²을 초과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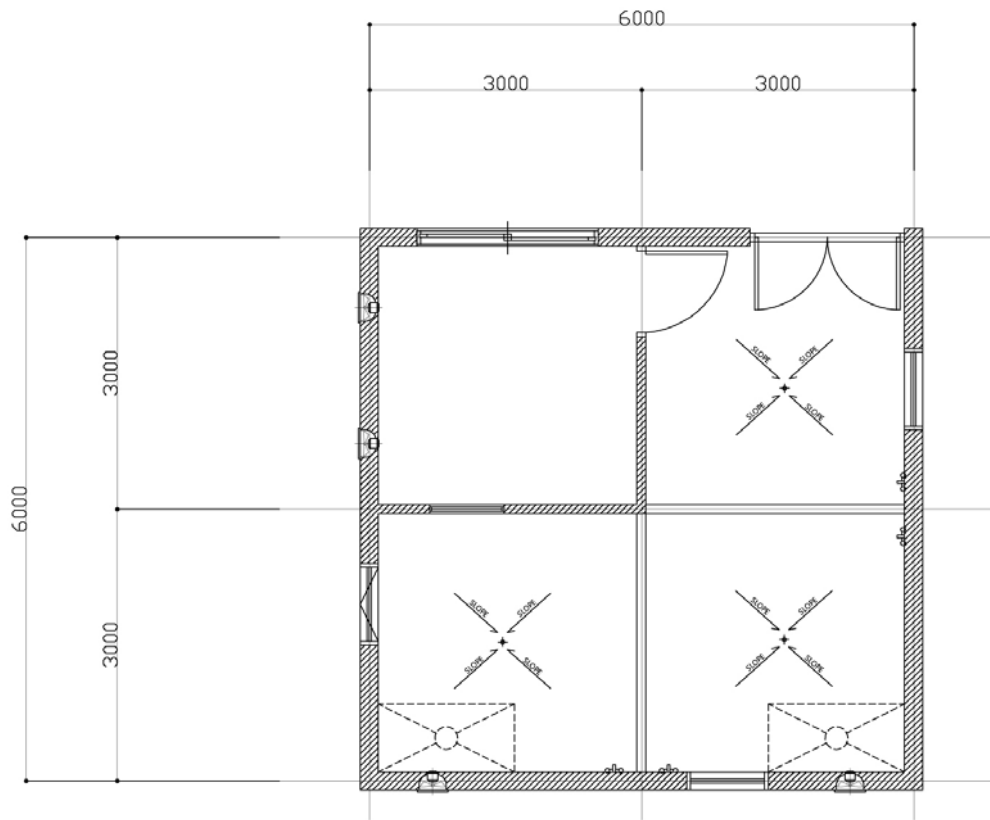
나.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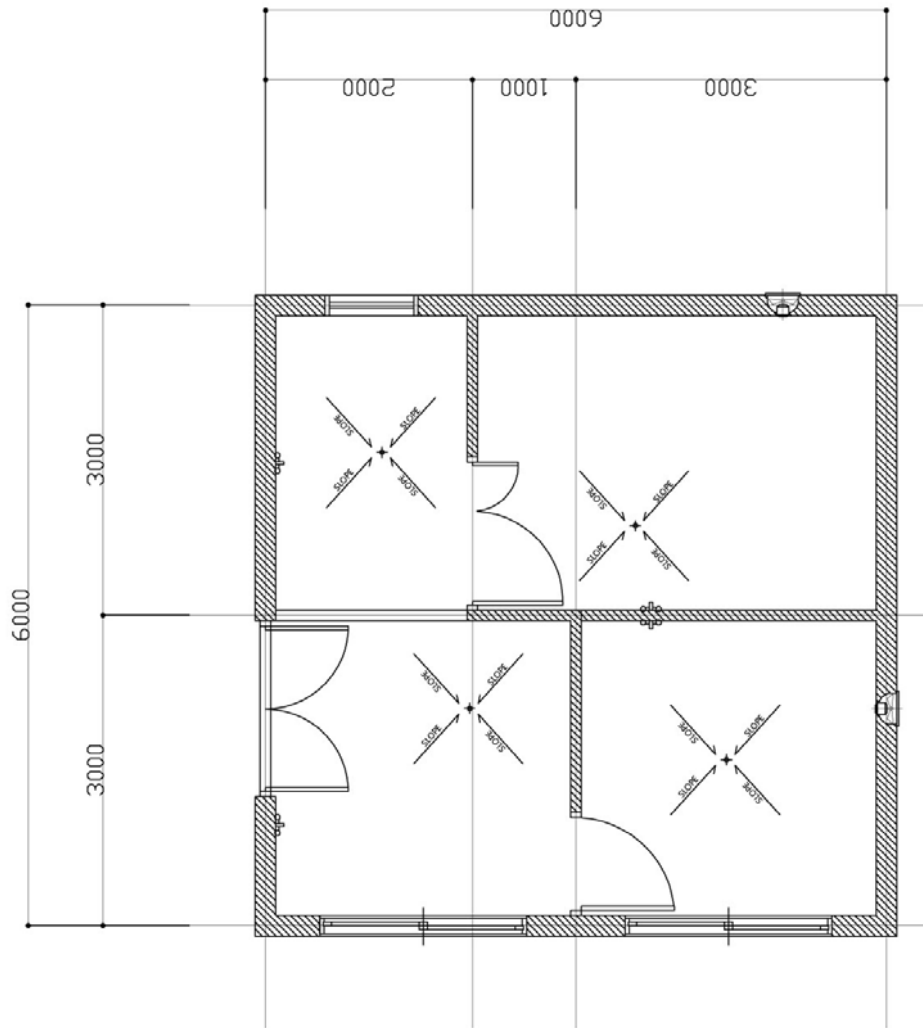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

다. 소규모 식품업체 평면도면 예시 (6m ×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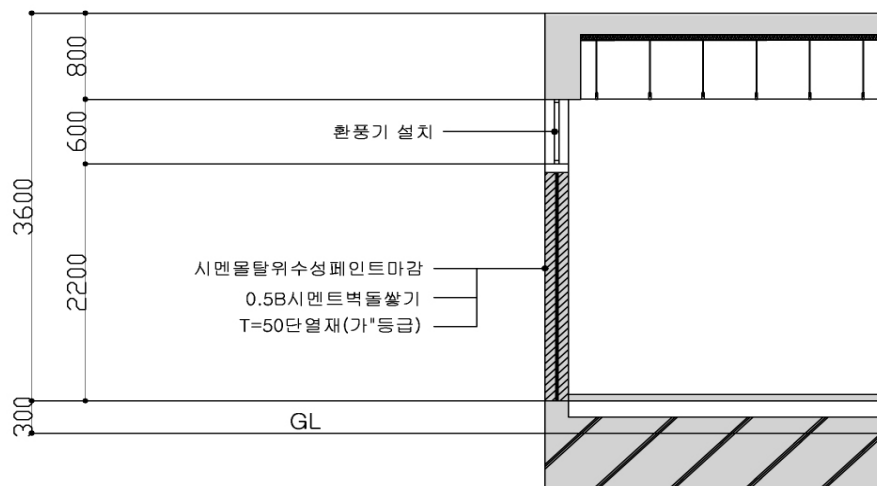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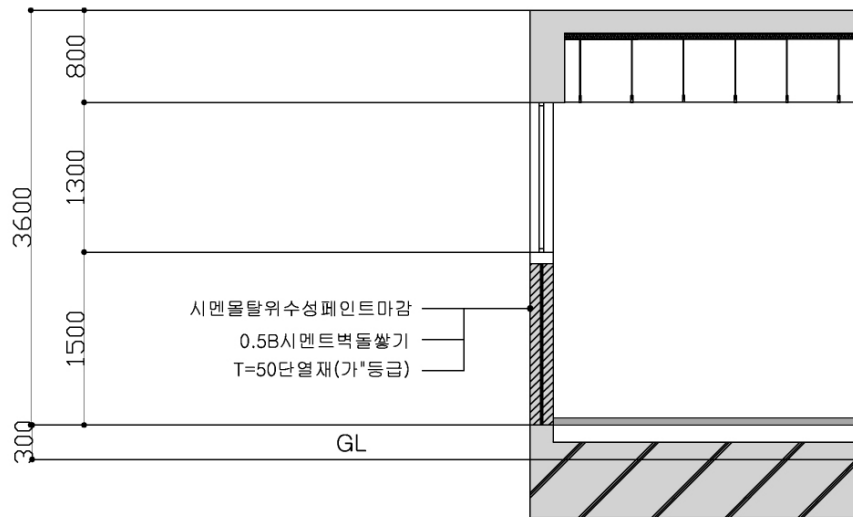








라. 소규모 식품업체 벽면도면 예시



마. 품목별 제조공정에 따른 시설 예시

1) 장류제조업

1-1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

- ① 작업장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② 발효실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가능)

1-2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

- ① 작업장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② 포장실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③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④ 기계류 - 교반이 가능한 용기 등

2) 다류 : 녹차(발효차)

▶제조공정 : 원료-선별-뒤음-유념-(발효)-건조-포장

▶필요한 시설 :

- ① 작업장 -뒤음 및 유념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② 포장실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③ 기계류 - 뒤음솔, 유념 작업대, 건조기(발효기)

3) 절임식품

▶제조공정 : 원료-세척-절단-절임-발효-포장

▶필요한 시설 :

- ① 작업장 - 세척 및 절임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②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4) 음료류

▶ 제조공정 : 원료-세척-절단-추출(당첨가)-숙성-여과-포장

▶ 필요한 시설 :

- ① 작업장 - 세척 및 추출, 상하수도 연결
- ②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③ 기계류 - 추출기, 파우치 포장기, 여과장치

2.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 설계

2.1.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의 필요성

농업의 경영형태의 변화 및 소비자패턴의 변화로 직접생산 또는 지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가공을 통한 복합경영을 지향하는 농업인의 창업 열기는 뜨거우나 창업의 과정과 위험성, 기회 등의 정보수집, 분석,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 창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창업자의 자질분석 및 환경 분석이 필요하나 기준이나 표준이 없다.
-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일일이 절차와 행정양식 등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
- 제품의 개발보다 경영성과가 중요하나 제품개발이 곧 성공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 예비 창업자로서 참고가 될 만한 종합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편중된 자료만으로 창업에 도전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창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지원기관 및 지원인력이 부족하며, 지원인력에 대한 교재가 산재하여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 인.허가 부서에서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고 있다.
- 창업자와 창업도움이의 창업흐름도(창업지도-map)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후 경영에서 필요한 경영스킬, 신고·보고, 인증 등 지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2.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 매뉴얼의 내용

해당 법령의 가부 확인, 각 단계사례 및 주의사항, 문서양식, 작성예시 등으로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 창업자나 관련 공무원, 컨설턴트, 어드바이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트로 정리한다.

(1) 창업 준비(계획) 단계에서 분석할 내용(Yes or No, 준비 %)

창업자, 창업자본, 창업아이템(제조기술), 창업환경, 창업시장, 창업관련 법(령), 유사창업사례, 창업 시 조력자, 동업자 등

(2) 사업 분야의 선정과 고려사항

- ① 당신의 성격에 맞는 업종인가
- ②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인가
- ③ 가족의 찬성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인가
- ④ 장래에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인가, 장래성은 있는가
- ⑤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배울 방법은 있는가
- ⑥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개업하기에 위험한 업종은 아닌가
- ⑦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닌가, 법적 규제는 없는가, 만일 그렇다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 ⑧ 창업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가, 소요자금의 조달은 가능한가

(3). 창업자

가)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1) 선천적 적성 및 자질
- (2) 후천적 경험 및 지식
- (3) 경영능력

나) 자신의 경험과 자질의 활용 가능성

다) 자신의 인생목표, 경영철학 및 취향과의 대조

라) 창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

(4)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

• 행정절차 (각종 인허가의 관련)

사업장의 환경 및 규제사항 점검(법률 - 법, 조례)

- 인, 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사항 진행
- 구비서류 및 교육필증 교부 방법
- 구비서류의 작성 예

• 공장설립

설립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 - 설립계획서 작성

건축, 소방, 시설기준 등 설계 내용

건축과 관련한 제반 시설물, 기계류의 평면계획

완료보고 및 사용승인

3) 제품제조 및 판매에 관한 내용

인 허가 완료 점검

신고서류 작성 및 완료

제품 검사 및 유통기한 설정

표시사항 및 포장디자인

판매방식 (통신판매, 대리점 판매, 우편판매 등)

물류관련 점검

4) 경영관리

고용, 인력관리

회계(자금) 및 세무 관리

구매 및 판매 관리

제공품, 상품, 제품 관리

홍보, 판촉, 영업, 판매관리

5)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례를 통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성법을 매뉴얼 작업

6)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 설명 및 서식 기재 예시

제 6 장

결론

농촌에서 농가가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들어 이러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면 생산물의 부가가치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다. 또한,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지형 가공산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의 소규모 가공산업이 가진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산지의 가공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지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인은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과 과도한 시설 기준이다. 현재 농업인이 산지에서 소량으로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식품가공업체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허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과도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산지의 농업 생산자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농업의 가공업체 설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가형 소규모 가공업체를 창업하는 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인허가 절차상의 규제 완화이다. 산지의 소규모 가공업체 설립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규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농가형 소규모 가공업을 ‘농업활동’의 연장으로 보고 관련 시설을 ‘농가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시설이 농가의 부속시설로 인정되었을 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가공과정에 배출되는 오염수(하수)를 ‘폐수’가 아닌 생활오수와 같은 ‘오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0.1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수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는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은 원료농산물을 씻는 데 사용된 세척수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배출되더라도 아주 소량이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세척수까지 폐수로 분류되어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규정을 적용받는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는 일반적인 식품가공업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대상이 되는 ‘농가형 소규모 식품업체’를 지역, 규모, 원료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농촌에서 농업인이 국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연접한 토지에 위치한 66㎡(20py) 이내의 시설을 구비한 식품제조를 위한 작업장에서 10인 이내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여러 가지 법령상 혹은 행정절차상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식품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법률적인 검토과정은 여전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검토단계에서 창업희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민원실의 해당 서식과 담당부서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또한,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규제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인허가 서류가 담당부서에 전달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규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창업희망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창업희망자가 인허가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창업희망자가 사전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창업매뉴얼이다.

창업매뉴얼에는 인허가의 법적 검토사항과 창업자 자질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향해야 할 조건, 상품에 관한 기준, 시장성, 마케팅 요소, 판매전략 등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매뉴얼이 잘 정립되면 이 매뉴얼은 창업자와 창업 어드바이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교재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지에서의 소규모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

러한 역할을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 위주의 지도사업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산지에서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지원기관으로 기능을 바꿀 때가 되었다. 복합지원기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는 산지의 소규모 식품업체 창업과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로 기능이 확대되면, 가공기술에 대한 교육, 시제품 생산, 창업에 필요한 절차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 장비 및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창업어드바이저 등의 인력도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생활개선 활동, 음식연구 활동, 소득자원 활동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다 왕성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에 개량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Local Food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70~80년대 산업일꾼으로 청년기에 도시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 후 생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배웠고, 지역의 전통식품을 일상적으로 먹어 왔다. 이들은 선대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통식품의 맛과 제조법을 전수받은 세대이다. 식문화의 계승이나 전통음식 체험교육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을 아는 사람이 건강할 때, 즉 정년-귀농세대가 농촌으로 돌아올 때 전통식품의 지혜를 발굴하여 제품화하고 판매를 통한 맛의 전달과 계승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농식품업체를 귀농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소득원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농촌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기존 사업장의 후계문제도 발생하거니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귀농자들은 좋은 해결방안 될 수 있다. 이들이 귀농 후 안정적인 소득개발에 농산물가공식품 제조는 훌륭한 방법이 되므로 일거양득 할 수 있다. 현재 귀농자 지원프로그램에 농가보수, 영농기반 확보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규모 농촌식품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귀농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형성한 인맥은 고객확보 연결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추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식품제조업은 녹색미래산업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지인 농촌에서 농산물의 직접 가공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생산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부패나 변질되지 않은 소재로 가공하니 품질이 우수할 것이고, 각종 첨가물의 사용을 배재할 수 있다. 또 활용되

지 못하던 농촌인력을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자원개발이 되는 것이다. 소규모 농산물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순환농법의 실천에 일환으로 퇴비가 가능하여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된다. 대규모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이 아니므로 가능한 것이다. 자연에서 발생한 것을 자연으로 순환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농촌 개발이다. 농산물의 생산현지에서 경작하여 수확하고 가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LOHAS의 전형이 될 것이다.

자가 또는 지역에서 경작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연결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농업은 생산에서 가공을 포함하여 고소득을 실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규제와 시장환경에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가공을 농업활동에 포함시키고,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로 인정하여 농촌에서 창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채산성이 맞는 투자규모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체험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고급 시장을 개척하여야겠다. 가공기술 및 경영마인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통해 교육과 어드바이저 상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전통식품제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서 정년퇴직-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식품 생산업체인 소규모 농식품업체가 Wellbing, LOHAS, Local Food를 실현하는 구성원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 목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6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7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 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9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제37조 관련)...	17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18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 제2항 관련).....	20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21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08.4.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33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 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34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제3조 관련).....	35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제6조 관련).....	37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 시설(제7조 관련).....	41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 물질(제4조 관련).....	43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 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44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46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8.11.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48
18.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5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53
20.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64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09.7.7>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78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8.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82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7.1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9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09.7.1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93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09.8.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94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09.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9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09.7.1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98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09.7.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99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09.7.1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01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09.7.1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 관련).....	105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09.7.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06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09.7.1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0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 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은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기준·규격
-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및 순대류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다. 식품첨가물

-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전통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수	배점	평점	판정
가. 공장 입지(立地)	2	6		
나. 작업장	7	21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3	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4	15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 위생	2	7		
아. 환경 위생	3	10		
자. 유통 관리	3	9		
차. 포장 및 표시	3	7		
합 계	30	100		
<p><판정기준></p> <p>○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 바목 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p>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 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가 . 공 장 입지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의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3.0 1.5 0			
	2) 공장에서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는 쉬운가?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B.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C.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 1.5 0			
	나 . 작 업 장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3.0 1.5 0		
		2)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구조와 기능은 적절한가? A.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B.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0 1.5 0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3.0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3.0 1.5 0		
심사 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가자의 의견
나 . 작 업 장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3.0 1.5 0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세척설비 및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 활용되고 있는가?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3.0 1.5 0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3.0 1.5 0		
	다 . 제 조 설비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9.0 4.5 0	
라 .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			

원료 조달 · 관리	<p>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p> <p>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p> <p>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p> <p>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p>	3.0		
심사 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의 의견
라 원료 조달 · 관리	<p>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p> <p>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p> <p>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p>	3.0		
	<p>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p> <p>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p> <p>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p>	3.0	1.5	0
마 공정 · 품	<p>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p> <p>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p>	5.0		

질 관 리	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2.5		
심사 사항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0		
심사 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가자의 의견
마 · 공 정 · 품 질 관 리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과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1.5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0		
마 · 공 정 · 품 질 관 리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바 · 용 수 관 리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부터 100m	2.0		

	<p>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p> <p>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p>	0		
	<p>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p> <p>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 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p> <p>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p>	3.0		
		0		
심사 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가자의 의견
사 . 개 인 위 생	<p>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p> <p>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p> <p>B. 건강진단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p> <p>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p>	3.0		
	<p>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p> <p>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p> <p>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p> <p>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p>	4.0	2.0	0
아 . 환 경 위 생	<p>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방법 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정한가?</p> <p>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p> <p>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시설</p>	3.0		
		1.5		

	<p>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p> <p>C. 공장 발생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p>	0		
	<p>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p> <p>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상태가 위생적인 경우</p> <p>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p> <p>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p>	3.0 1.5 0		
	<p>3)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p> <p>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p> <p>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p> <p>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p>	4.0 2.0 0		
심사 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가자의 의견
자 유통 관리	<p>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p> <p>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p>	3.0 1.5 0		
	<p>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p> <p>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p> <p>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p> <p>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p>	3.0 1.5 0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3.0 1.5 0		
심사 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가자의 의견
차 포 장 및 표 시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0 1.5 0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입·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입·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0 1.0 0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0 1.0 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제37조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식품군	식품의 유형
가. 장기보존식품	1) 통·병조림식품 2) 냉동식품
나. 설탕	모든 품목
다. 포도당	모든 품목
라. 과당	모든 품목
마. 올리고당	모든 품목
바. 어육가공품	연육
사. 식용 유지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아. 커피	인스턴트커피
자.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차. 드레싱(dressing)	모든 품목
카. 주류	모든 품목
타. 기타 식품류	캡슐(capsule)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업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업업자는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식품제조·가공업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업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2항 관련)

1. 우수업소

-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 라.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 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사. 제조하려는 식품 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 자. 작업장·냉장시설·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작업화 또는 손 등을 세척·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폐수이동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 되어야 한다.
- 하.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그 밖에 우수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9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

반행위(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법 제11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다목2)을 적용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자.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 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7.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II.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7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p>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p> <p>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p> <p>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p> <p>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p> <p>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p> <p>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p> <p>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p>		

- 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타. 나뭇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파. 이물이 혼입된 것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의 혼입
 - 2) 칼날,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 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가물

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아.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차.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 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타.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 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하. 가목부터 과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 나. 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
-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및 제조일자(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라.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 한 경우
- 마. 식품등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식품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
-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6 제1호를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16 제3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6 제8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6 제9호를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1호가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4) 별표 17 제1호나목·라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2.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p>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p> <p>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p> <p>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p> <p>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 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p>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08.4.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1.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5.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6.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 류	배 출 규 모
제 1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제 2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3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4 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사업장
제 5 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text{폐수배출량} = \text{용수사용량} - (\text{생활용수량} + \text{간접냉각수량} + \text{보일러용수량} + \text{제품함유수량} + \text{공정 중 증발량} + \text{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text{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황과 그 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 1-디클로로에틸렌
39. 1, 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폼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2. 1,4-다이옥산
4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44. 염화비닐
45. 아크릴로니트릴
46. 브로모포름
47. 퍼클로레이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 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표준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 시설)	11	○103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고기·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	1511 1512	○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해상

5)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 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541 1543 1544 1549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증류주·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	
44) 가공업 및 정제업 제조시설	24391	
71) 수도사업시설	410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51313 52213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 시설	○임가공시설과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 가. 스크린
- 나. 분쇄기
- 다. 침사(沈砂)시설
- 라. 유수분리시설
-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바. 혼합시설
- 사. 응집시설
- 아. 침전시설
- 자. 부상시설
- 차. 여과시설
- 카. 탈수시설
- 타. 건조시설
- 파. 증류시설
-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 가. 화학적 침강시설
- 나. 중화시설
- 다. 흡착시설
- 라. 살균시설
- 마. 이온교환시설
- 바. 소각시설
- 사. 산화시설
- 아. 환원시설
-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가. 살수여과상
- 나. 폭기(瀑氣)시설
-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20. 1,4-다이옥산
2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2008.11.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m ³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50m ³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 이하
			부유물질(mg/L)	10 이하
			총질소(mg/L)	20 이하
			총인(mg/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 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

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 mg/L 이하와 8mg/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m³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m ³ 미만	1일 처리용량 100m ³ 이상 200m ³ 미만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mg/L)			
	부유물질(mg/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 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mg/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L 이하, 부유물질량 10mg/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2호가목1)의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별표 13에 따른 생태독성은 다른 수질오염물질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사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사설(공동방지사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나) 영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지사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법 제42조 제1항제6호

경우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8호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9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회석하여 배출한 경우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회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3호
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2호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9)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법 제4조의6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 다)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4항, 법 제40조
10)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나)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 단서
다) 그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라) 그 지역이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5호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1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4호
13)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14)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기간은 영 제39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1) 또는 9)의 개선명령 기간은 8개월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8)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 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8)의 가)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조치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 5)와 10)의 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5), 6), 8)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비고 6에도 불구하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이 1)의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적용한

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나.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 등을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나)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다)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1호
5)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 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2항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4제2항 법 제42조 제1항제12호
-----------------------------------	----------------------------

비고: 1. 1), 4), 7)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적용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7)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2)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법 제42조

<p>3)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p> <p>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p> <p>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p>
---	-----------------------------------

- 비고: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법 제42조 제1항제1호</p>
<p>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p> <p>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p> <p>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p>	<p>법 제42조</p>
<p>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p>	<p>법 제42조</p>
<p>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p> <p>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p>	<p>법 제42조</p>

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5)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가)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2항제3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비고: 1. 사용중지기간은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로 한다.

2.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가)부터 마)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하
되,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법 제53조제3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			

바.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4항			

비고: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끝낸 날까지로 한다.

사.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법 제64조			

경우	제2항제1호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사) 저장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아)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위반된 경우	
자) 그 밖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1호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11)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우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14) 변경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7)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4조
15)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법 제64조

지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16)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	법 제64조
17)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18)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19)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법 제64조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23) 등록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이 아닌 폐수를 수탁한 경우	법 제64조
24) 자가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25) 자동측정기기의 고장을 방지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64조
26)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지면적 : m² ◦ 공장건축면적 : m² ◦ 제조시설면적 : m² ◦ 부대시설면적 : m² ◦ 환경시설면적 :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기계시설) 명세서 ◦ 생산공정도
2.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건축 <input type="checkbox"/> 공작물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채취 <input type="checkbox"/> 토지분할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서류 첨부
3.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 소재지 ◦ 전용 신청면적 : m² ◦ 용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공부서류
4.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의 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신고서 -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서류 첨부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5.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 소재지 ◦ 용도변경 신청면적 : m² ◦ 용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6.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의 목적 ◦ 사업기간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토사처리계획 ◦ 피해방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내역서 1부 ◦ 전용예정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 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7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1.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
8.입목벌채의 허가와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	◦ 벌채구역 ◦ 벌채 대상 입목	◦ 벌채허가신청서 1부 - 벌채구역도,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각 1부 첨부 ◦ 입목벌채신고서 1부.
9.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구 간 : ◦ 연 장 : ◦ 폭 원 :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예산명세서, 구조검토서 ◦사용권리증명서류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0.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명 : - 노선번호 :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시 흙·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의 경우에만한다)
1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서류
12. 사방지내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의 종류 ◦ 허가받고자 하는 면적 : m² ◦ 수량 	
13.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m² ◦ 해제 받고자 하는면적 : 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도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4.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사용의 위치 ◦ 점·사용의 목적 ◦ 점용면적 ◦ 공작물의 설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의 종류 - 규모 (길이, 너비) ◦ 토석 등 채취(투기) 및 물의 인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석 등 채취(투기) 방법 - 공업용수인 경우 물의 인수량 ◦ 공사 착공일 ◦ 준공 예정일 ◦ 점·사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 계획서 ◦ 공작물설치 계획서
15.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서 ◦ 조사서, 지형도, 경제성검토서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 (하천의 경우)
16.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명칭 ◦ 위치 ◦ 점용면적 ◦ 폐천 예상면적 ◦ 공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에 한함), 표준단면도, 설계서
17. 하천 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		
㉠유수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명 : ◦ 사용위치 : ◦ 사용면적 : ◦ 하천 점용면적 : ◦ 사용의 시기 : ◦ 하천점용기간 : ◦ 공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축척1/25,000) ◦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 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명 : ◦ 점용위치 : ◦ 점용면적 : ◦ 점용목적 : ◦ 점용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 (축척 1/25,000) ◦ 평면도(축척1/3,000 ~ 1/6,000)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명 : ◦ 점용위치 : ◦ 점용면적 : ◦ 점용기간 : ◦ 공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 (축척 1/25,000)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설치의 경우)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명 : ◦ 위치 : ◦ 시행지 면적 : ◦ 점용기간 : ◦ 공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 (축척 1/25,000)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사력, 하천산출물 채취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명 : ◦ 위치 : ◦ 채취장소 : ◦ 종류 및 장소 : ◦ 채취면적 : ◦ 채취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 (축척 1/25,000)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종류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지정신청서
1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종류 :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7조의 서류첨부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사설계 ◦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 또는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첨부
21.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 토지의 이용계획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22. 초지의 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 계획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첨부
2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소재지 ◦ 국유재산의 종류 ◦ 지번, 지목,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공부서류
24.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소재지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서류
25.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1항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의 목적 ◦ 사용의 대상 및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신청서
26.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허가신청서 - 기존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관하여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27.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 폐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종류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 한한다) 별도 첨부
2.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 공사기간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
3.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설계서, 수질 및 방류수량조사서
4.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서
5.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등의 사용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창호도,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자의 기술자격증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6.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 - 공사업자의 소방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설계도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 첨부
7.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 소화설비 ◦ 화재탐지설비 ◦ 저장탱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제조소설치허가신청서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구조설비 명세표, 소화설비 설계도서, 화재탐지설비설계도서, 저장탱크설계도서·공사계획서·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 등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량 : - 수 량 : ◦ 방지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량 : - 수 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도면
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처리예상량(톤/연) ◦ 방지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별도 첨부
10.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 제52조 및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종류 ◦ 전기설비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설치허가서(설치허가대상에 한한다)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12.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소 종류, 동수 ◦ 종류별 허가 저장량 ◦ 저장소 위치 ◦ 준공일 ◦ 사용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소설계도면 및 명세서 ◦ 저장소 및 부근 약도 ◦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 폐율, 용적율,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 ◦ 건축법 제8조5항관련 허가또는 신고서류
14.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 폐율, 용적율,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15. 공작물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건 (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 배치도, 구조도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6.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유발 시설의 종류 및 용량, 면적 착공 및 준공 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유발 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17.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6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설비의 위치 가스설비의 위치 저장설비의 능력 가스설비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검토서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18.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위치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서 첨부
19.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 공사의 기술검토서, 공사의 공장 심사결과서 첨부
20.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 위치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첨부
21.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제조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정관등 등본 기술검토서
2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고압가스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23.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및 조건이행신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영업장위치도 시설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장소, 처리방법, 용량 설치완료일 : 사용예정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 1부
2. 사용승인 동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3.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착공 연월일 완공 연월일 시공 신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공사도면 1부
4.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위치 설치허가 일자 및 번호 착공 연월일 완공 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1부 공사도면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일 사용개시예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한다)
6.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내역 가동개시예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실 설치 허가증
7.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검사신청서 시설기기배치도 안전검사보고서
8.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먹는물관리법제2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샘물개발 허가기간 취수정의 위치 및 개소수 취수한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샘물개발허가증사본,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 제조공정설명서, 취수정별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내역서, 취수정형성상태를 촬영한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인·허가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9.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전검사신청서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 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0.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시설 설치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 설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제1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공검사	◦ 완성검사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
11.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완성검사신청서
12.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신청서
13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의 준공검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의 준공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보고서 - 준공조서 - 설계도서 - 동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7. 토지이동 등의 등록 신청 (지적법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09.7.7>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별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 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p>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p> <p>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p>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p>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8.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

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

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가. 분뇨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09.7.1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09.7.1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09.8.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무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09.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09.7.16>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무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09.7.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09.7.1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적 내지 다목적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09.7.1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09.7.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09.7.1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